

인도네시아 및 중국 수출 증진을 통한 차세대 세계일류 기업 및 상품 육성 방안 세미나

- 일 시 : 2014. 12. 22(월)
- 장 소 : COEX 3층 Hall E4
- 주 최 : (사)대한화장품협회

인도네시아 및 중국 수출 증진을 통한 차세대 세계일류 기업 및 상품 육성 방안 세미나

- 일 시 : 2014. 12. 22(월) 13:30~18:00
- 장 소 : COEX 3층 Hall E4
- 주 최 : 대한화장품협회
- 목 적 :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와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수출 증진을 통한 차세대 세계일류 기업 및 상품 육성
- 프로그램

일시	내용	비고
13:30~13:55	등록	
13:55~14:00	인사말	
14:00~14:15	세계일류상품 육성 사업 소개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차장
14:15~15:15	인도네시아 화장품 관련 제도 및 할랄인증	Tutut Wijayanti Manager, Regulatory Affair PT Unilever Indonesia
15:15~16:15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현황	Juanita Aditiawan Head of External Affairs Perkosmi
16:15~16:30	커피 브레이크	
16:30~17:10	FTA 활용 방안 - 원산지 증명을 통한 관세 절감-	한국무역협회 양태종 관세사
17:10~18:00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의 변화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립 부회장

목 차

I . <주제발표 1>	
- 세계일류상품 육성 사업 소개	1
II . <주제발표 2>	
- 인도네시아 화장품 관련 제도 및 할랄인증	7
III . <주제발표 3>	
-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현황	25
IV . <주제발표 4>	
- FTA 활용 방안	39
V . <주제발표 5>	
-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의 변화	65

I.

세계일류상품 육성 사업 소개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차장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소개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 세계일류상품 추진목적 및 추진경과



추진목적

- 수출품목의 다양화, 고급화와 미래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사업추진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품목 및 기업 육성 목적 운영

추진경과

- 2001년 '세계일류상품육성 촉진대회' 개최
- 2003년 무역진흥확대회의 시 세계일류상품 육성계획 보고
- 200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舊 산업기술재단) 운영기관 지정
- 2009년 한국생산성본부 운영기관 지정
- 2013년 KOTRA 통합운영기관 지정
- 2014년 KOTRA 이관 이후 첫 세계일류상품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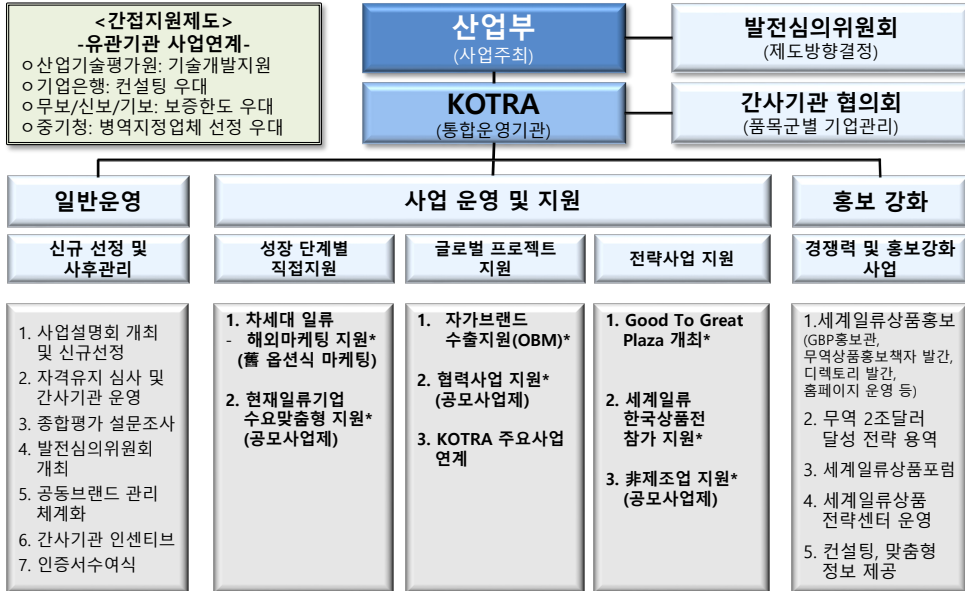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3.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요건

세계일류상품

-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_제조업 제품>

구분	선정기준
현재 일류상품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차세대 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 신성장동력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3.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요건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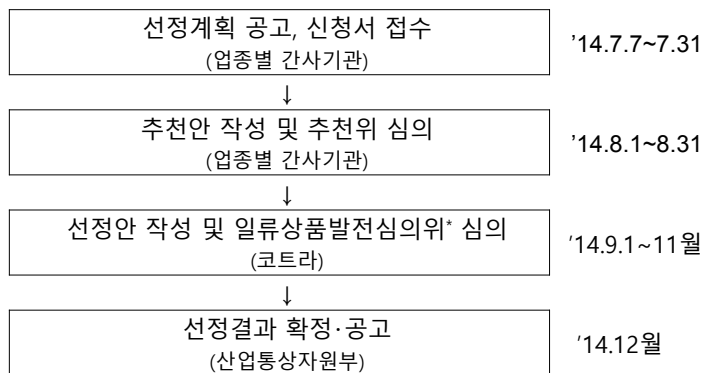
-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_제조업 제품>

구분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4. 선정 절차 및 일정(2014년 참고)



* 일류상품발전심의위 : 산업부차관(위원장), 학계, 연구소, 언론계, 업종별 단체 등 20명



II.

인도네시아 화장품 관련 제도 및 할랄인증

Tutut Wijayanti

Manager, Regulatory Affair

PT Unilever Indonesia



COSMETIC REGULATION IN INDONESIA

*Presented to : Korean Cosmetic Association
Seoul - 22Dec 2014*

TUTUT WIJAYANTI



**PC REGULATORY AFFAIR LEADER
– UNILEVER INDONESIA**

tutut.wijayanti@unilever.com

**DEPUTY VP EXTERNAL AFFAIR
INDONESIA COSMETIC
ASSOCIATION (PERKOSMI)**

Website : <http://perkosmi.com>



AGENDA



1. Indonesian Government who responsible to regulate cosmetic product
2. The Law & Regulation
3. Cosmetic definition
4. Requirement to market
5. Important Guidelines
6. Product Information File
7. Halal : Definition, Regulation & Haram materials



Related Government Agencies



The National Agency of Drug & Food Control

- Product notification
- Cosmetic GMP certification
- Import Letter Recommendation



Ministry of Health

- Product registration
- Manufacturing License
- Cosmetic GMP certification



Indonesian Custom

- Import clearance



MUI (Indonesian Council of Ulama)

- Halal certification



Law and Regulation



1. Consumer Protection Law (The Law No 8/1999)
2. Government Regulation on Human Health (The Law No 23/1992)
3. BPOM Regulation on Cosmetic Product
 - Cosmetic Manufacturer
 - Ingredient Cosmetic
 - Cosmetic Notification
 - Labeling Requirement
 - Product Information File
 - Heavy Metal



Definition and Scope of Cosmetic Product



Intended for contact with the **external parts** of the human body :

- epidermis, including around the eye area
- hair system
- nails
- lips
- external genital organs
- teeth
- mucous membranes of the oral cavity

6 main functions:

Cleaning, Perfuming, Changing appearance, Correcting Body Odor, Protecting & Keeping in good condition





Guideline for Cosmetic Notification

Applied since 1 January 2011

General



- Notification is an acknowledgement to product launch (mandatory to be done before launching the product)
- Who should do the notification :
 - Cosmetic manufacturing holding Cosmetic Production License & Cosmetic GMP (CPKB)
 - Importer
 - Company who do toll manufacture or contract to cosmetic manufacturing holding cosmetic production license & GMP (CPKB)



Notification Procedure & Requirement



- Online system (<http://notifkos.pom.go.id/bpom-notifikasi/index.php>)
- Information need to be key in :
 - Product information (product name, category/sub category, netto & product format)
 - Full ingredient list in the formulation (breakdown), the level & it's function
 - Manufacturing > need to be registered before proceeding the product notification
- The submission of the artwork & claims will be based on request (not for every submission) which imply to pending process



Notification Number



- The notification acknowledgement will be issued in the format of BPOM Notification Number
- Will be announce within 14 working days after the payment validation done
- The BPOM Number will be obsolete within 6 months if there is no production or shipment happen. And will be extended into 3 years or it can be depend on the validity of the LoA



Import Product



- 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must be issued by the authority at the exporting country & legalized by Indonesian Embassy
- Cosmetic GMP (certification) or ISO22716
- LoA (Letter of Authorization) > manufacturing to distributor
- All goods coming into Indonesia must be cleared through Customs and it's subject to customs duty and other taxes related to import unless specifically exempted from duty by law.
- *Note to consider : make sure the product entering Indonesia before 6 months obsolete validity date*



Labeling Requirement



- General :
 - *Labelling* means information written or printed or graphic matter on the immediate or outer packaging and any form of leaflets
 - The information must be complete, objective and not misleading
 - Is not allowed to put any information which can give an interpretation as medical or drug function
 - Product's function, instruction to use & warning must in Indonesian language, apart from that it may use other language
- Mandatory labeling information requirement :
 - Product name
 - It's function
 - Instruction to use, unless it's clear from the product name or presentation
 - Full ingredients list
 - Name & country of manufacture
 - Name & complete address of the applicant (company)
 - Batch number
 - Nett weight
 - Expiry date
 - BPOM Number (mandatory since August 2013)
 - Warning or special precautions



Ingredient



- The ingredient shall be specified using the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INCI), or in case not available it's allow to use the nomenclature from the latest edition of other International standard references.
- Botanicals and extract of botanicals should be identified by its genus and species.
- The ingredients must be declared in descending order of weight, ingredients in concentrations of less than 1% may be listed in any order after those of concentration of more than 1%.
- Coloring agents may be listed in any order after the other ingredients, in accordance with the color index (CI) number. For decorative cosmetics products marketed in several color shades, all coloring agents used in the range may be listed, provided that the term “may contain” or “+/-” be added.
- Perfume and aromatic compositions and their raw materials may be referred to by the word “perfume”, “fragrance”, “aroma” or “flavor”.



Additional note on Labelling



- The expiry date of the product must be stated in clear terms & it should be preceded by the word “expiry date” or “best before” or “Exp” (e.g. Exp dd/mm/yy or Exp mm/yy) .
- The name of primary assembler manufacture need to be mentioned
- In case of limited space of primary packaging, min information that must be put on the label are :
 - Product name
 - Batch number
 - Nett weight
 - BPOM Number (mandatory since August 2013)

And the rest of information must be declare in leaflet, brochure, hang tag, etc



Product Claim Guideline



- Only cosmetic claimed benefits can be made
- Justified by technical data and/or cosmetic formulation or preparation
 - Ingredient properties (from literature, supplier files, etc)
 - Test performed on the finished product
 - Other supporting document such as Scientific Journal, Thesis, etc
- Text name, trademarks, pictures, figurative or other signs shall not be misleading
- Cosmetic can't claim a medical or therapeutic (treating or preventing disease)



Micro & Heavy Metal Limit

Test/Requirement	Cosmetic for : -Children under 3 years old - Cosmetic for/around the eye - mucosa membrane	Other cosmetic
Total Plate Count	< 500 colony/g OR colony/mL	< 1000 colony/g OR colony/mL
Fungi & Yeasts	< 500 colony/g OR colony/mL	< 1000 colony/g OR colony/mL
<i>P. aeruginosa</i>	Negatifve per 0,1g atau 0,1 mL of the test sample	Negatifve per 0,1g atau 0,1 mL of the test sample
<i>S. aureus</i>	Negatifve per 0,1g atau 0,1 mL of the test sample	Negatifve per 0,1g atau 0,1 mL of the test sample
<i>C. albicans</i>	Negatifve per 0,1g atau 0,1 mL of the test sample	Negatifve per 0,1g atau 0,1 mL of the test sample

Contamination	Requirement Standard
Mercury (Hg)	< 1 mg/kg or 1 mg/L (1 ppm)
Lead (Pb)	< 20 mg/kg or 20 mg/L (20 ppm)
Arsen (As)	< 5 mg/kg or 5 mg/L (5 ppm)



Product Information File



- Format (follow ASEAN PIF guideline):
 - Part 1 : Administrative doc & product summary
 - Part 2 : Safety & quality data of each ingredient/formula
 - Part 3 : Product quality data
 - Part 4 : Safety & Efficacy data
- Local language or English
- Electronic or hard copy
- Up to date data
- Should be ready to be audited by BPOM at any time after product launch



BPOM Audit



- Manufacturing Audit for Cosmetic GMP (CPKB) → *without notice* :
 - Premises
 - Document
 - Filling system
 - PIF availability
- Audit PIF :
 - Specific to product (s)
 - Will be very detail to : claim support, product safety and product quality
 - *Routine audit* (30 days notice prior to audit) & ad-hoc audit (max 2 days notice)



Halal

Halal – haram definition

- Halal
 - Lawful, permissible
 - Any action which is approved by Allah in the Quran or the hadith

- Haram
 - Unlawful, prohibited, not permissible
 - Any action forbidden by Allah in the Quran or by the hadith

Basic principle : prohibiting the halal and permitting the haram is not allo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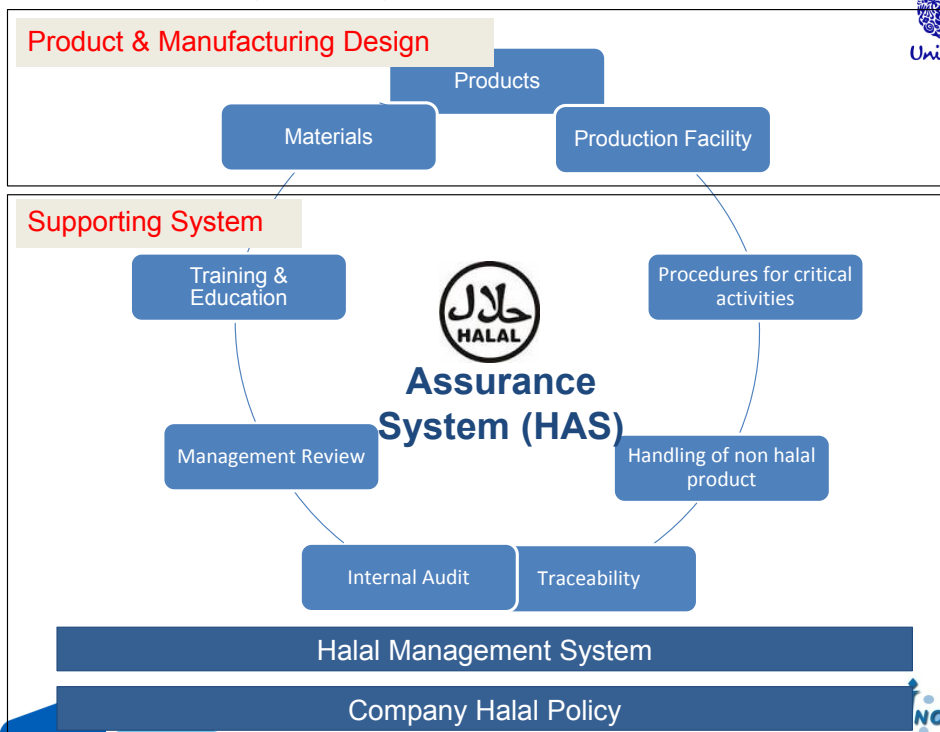
Halal Regulation – What will change?

	Current	New Halal Act
Compliance	Voluntary	Mandatory – for all product categories, incl. chemicals Will be in effect in 5 years [Sept 25 th , 2019]
Scope	Primarily Raw Materials, Manufacturing process & facility and the products	Total Supply Chain - from Raw Materials, Manufacturing, Packaging, distribution & presentation to consumers
Certificate Validity	2 years	4 years
Application & Approval Process	Sole Auditor – LPPOM MUI *) MOU between FDA & MUI Overseas halal approval not recognized by MUI [not allowed to put halal logo on pack]	Auditor : Halal Audit Institutions Administrative : Under Ministry of Religious Affair – potentially longer process Collaborate with & recognize overseas halal body → no need double assessments

*) LPPOM MUI = An institution formed by Indonesian Council of Ulama to run function in protecting moslem consumers in consuming products of foods, drugs, and cosmetics.

Halal Implementation Key Criteria

as per current practice with LPPOM



Haram Materials Stipulated in Qur'an



- ➔ Dead animals without slaughtering including halal animals not slaughtered to Islamic law
- ➔ Blood
- ➔ Swine flesh (Pork)
- ➔ Animals slaughtered in the name other than Allah (Al-Baqarah: 172-173, Al-Maidah-3, Al-An'am: 145)
- ➔ Alcoholic beverages/Khamr (Al-Baqarah: 219)
- ➔ Some materials are considered haram as mentioned in Hadits but some are debatable among different mazhabs (school of thoughts) → need fatwa



Halal Guideline for Cosmetics



1. **Internal uses**/ possible to be eaten/ inserted into body (e.g. lipsticks, toothpaste, botox) → must not consists of haram substances
2. **External uses** → **Not** made from *najis* (unclean or filthy) substances
3. Must not contain materials derived from part of human body (e.g. placenta, keratin from human hair, etc)



Critical points for cosmetics



- Source of ingredients (animal, human, microbial, synthetic, plant)
- Source of application tools (brushes for rouge, lipstick, face powder, etc)
- Production facility



ASEAN Cosmetic Ingredient Listings: Annexes II to VIII

From the EU Cosmetic Directive

Annexes	Description
Annex II	List of Substances which <u>must not</u> form part of the composition of Cosmetic Products i.e. substances which are <u>banned</u> in cosmetic products (Negative List)
Annex III	List of substances which cosmetic products must not contain except subject to restriction and conditions laid down i.e. list of restricted substances For each substance there is a field of application and/or use; a maximum authorized concentration in the finished product, other limitations as well as conditions of use and warning which must be printed on the label
Annex IV	List of coloring agents allowed for use (positive list). Each color is described by its color index and fields of allowed application are liste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ll cosmetic products 2. All products except those to be applied in the vicinity of the eyes 3. Allowed exclusively in products to come in contact with the mucous membrane 4. Allowed exclusively in products intended to come in contact briefly with the skin

Annexes	Description
Annex V	List of substance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Directive (none)
Annex VI	List of Preservatives which cosmetic products may contain (positive list) Each substance is described with its maximum authorized concentration, limitations/requirements and conditions for use/warnings <i>Substances with a (+) can be used at a different concentration if they are used for a different purpose than to preserve the product</i>
Annex VII	List of UV Filters which cosmetic products may contain (positive list) Each substance is described with its maximum concentration, other limitations and conditions of use/warnings



T H A N K S



Ⅲ.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현황

Juanita Aditiawan

Head of External Affairs

Perkosmi(Indonesia Cosmetic Association)



AN OVERVIEW OF INDONESIAN COSMETICS MARKET

JUANITA ADITIAWAN
HEAD OF EXTERNAL AFFAIRS
PERKOSMI

WHAT ARE WE HERE TO TALK ABOUT?



What's Happening in
Indonesia?



Key Beauty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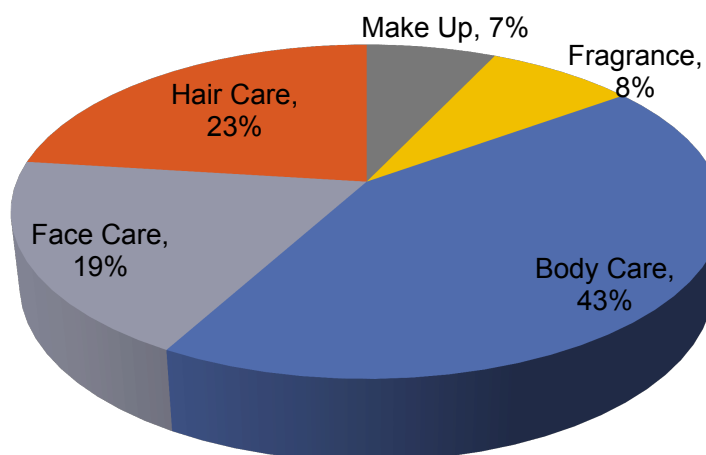
Opportunities in Remarkable
Indonesian Market

INDONESIAN COSMETICS INDUSTRY - SUMMARY

- The size of Skin Care & Cosmetics industry is expected to be around US\$ 1.4 billion in 2014
- Continuous strong growth of 15% in the last 3 years
- Growth is supported by increasing middle class segment and purchasing power
- Also increasing male customers
- According to the government data there are 700 cosmetics companies in indonesia, 180 are SMEs
- Local production vs imports: 90% vs 10%
- From the local production, international brands' shares are 70% (multinational companies: Unilever, L'oreal, Mandom)
- Local brands makes up 20% of the market
- The rest are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brands and illegal imports.
- Few Korean brands have entered the market: Etudes, Face Shops, Tonny Molly, Liol, Skin Food, Laneige

INDONESIAN COSMETICS INDUSTRY MARKET VALUE BY CATEG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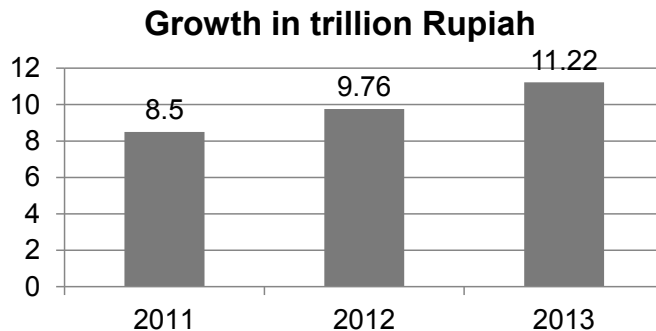
Estimated Market Value in 2014: \$ 1.42 billion



THE COSMETIC INDUSTRY IN INDONESIA

A Resilient Industry

has survived many financial crisis in Indonesia, yet the industry still shows growth of 15% year on year. Market Value in 2014 is estimated at around \$1.4 b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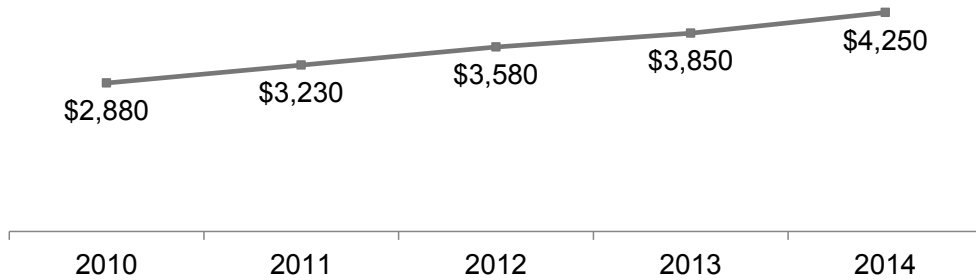
THE COSMETIC INDUSTRY IN INDONESIA

Rural areas are catching up with the urban centers as quickly as retail networks expand beyond major cities and as new consumers enter the market

Sales of cosmetics in urban areas increased by 9.4% year-on-year in the first half of 2013, while in rural regions, sales boomed by 27.5%.

KEY ECONOMIC INDICATORS

Indonesia GDP/Capita i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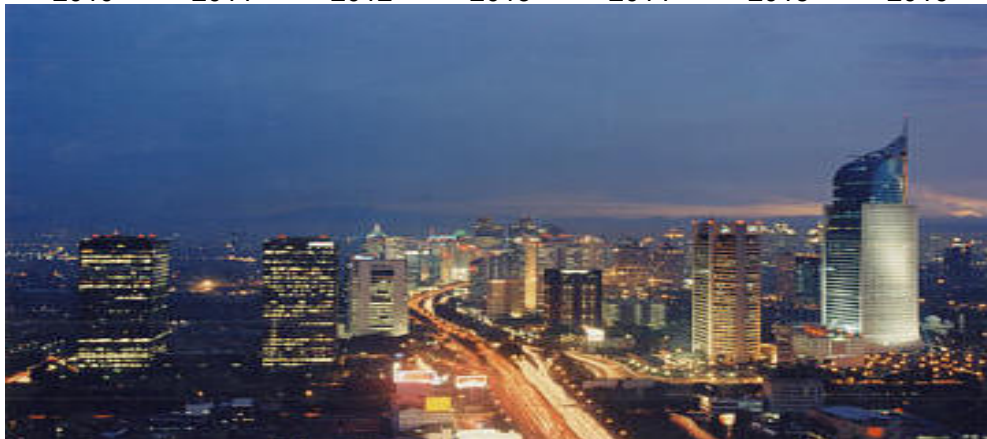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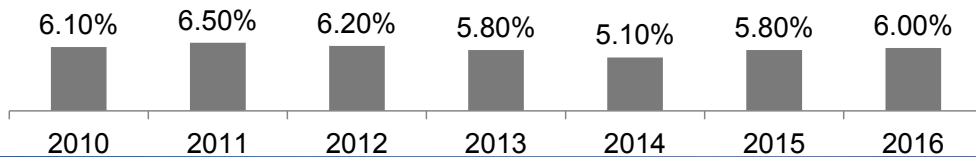


Indonesia is on the path to become a **high income country**. Actual GDP has reached \$4,250 in 2014. It is expected to reach \$18,000 by 2030.

Source: Ministry of Finance

KEY ECONOMIC INDICATORS

GDP Growth Rate Forecast



Source: Ministry of Finance

KEY ECONOMIC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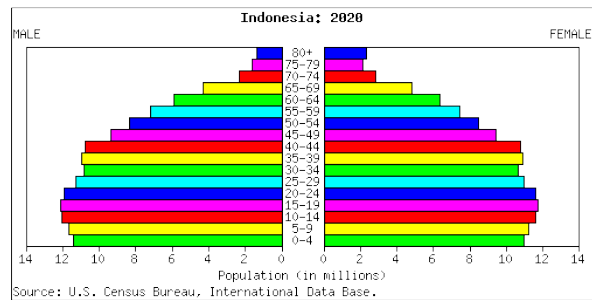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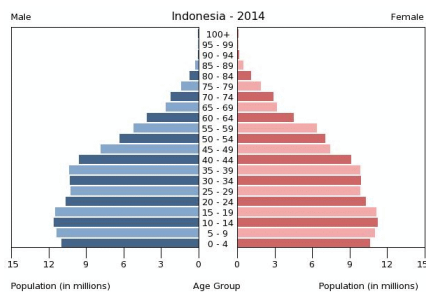
PROJECTED TOP ECONOMIES BY GDP

2010	2020	2030
1. EUROPE	1. US	1. CHINA
2. USA	2. EUROPE	2. USA
3. CHINA	3. CHINA	3. EUROPE
4. JAPAN	4. JAPAN	4. INDIA
5. BRAZIL	5. BRAZIL	5. INDONESIA
13. INDONESIA	9. INDONESIA	

By 2030, Indonesia will surpass Brazil and Russia to become the **#5 economy in the world**

Source: Ministry of Finance

BONUS DEMOGRAPHY



	2014	2020
Population	252 mio	269 mio
Male Female Ratio	1:1	1:1
Dependency Ratio	48.7%	45%
Middle & Affluent Class	74 mio	141 mio

Source: Ministry of Finance

URBANIZATION TRENDS



KEY BEAUTY TRENDS IN 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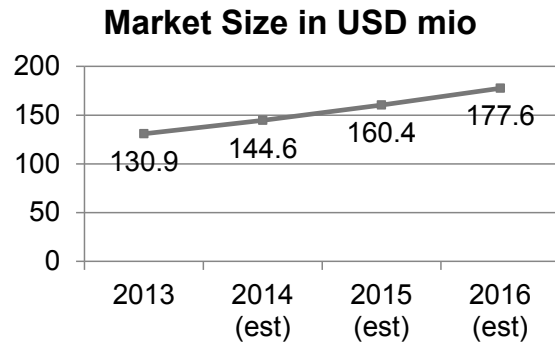
The Korean Wave



KEY BEAUTY TRENDS IN INDONESIA



Men's grooming market has continuously increased in the past years



KEY BEAUTY TRENDS IN INDONESIA

Halal
Cosmetics



KEY BEAUTY TRENDS IN INDONESIA

Mega Trends:

- Convenience
- Healthy
- Feeling/Looking G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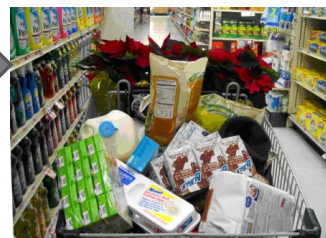
LARGE MARKET OF MIDDLE CLASS DEMANDING CONVENIENCE



Educated working woman



Convenience Modern Retailing



Product and Service that saves time



Out home beauty makeover

FREQUENT SHOPPING

Frequent/everyday shopper – means proximity. Traditional retail habits that saw local markets as the center of activity have been quickly replaced by that of malls and hypermarkets that offer convenience as well as entertainment



LOVE PREMIUM BUT AFFORDABLE



SPECIALTY STORES FOR COSMETICS



OPPORTUNITIES IN REMARKABLE INDONESIAN MARKET

- **Finished Cosmetic Products, especially in middle low market**
- **Cosmetics products that are still imported to Indonesia**
- **USD 2 trillion Halal Cosmetic Market**
2 Korean brands already have halal certificates: Talent & Pulmuone

OPPORTUNITIES IN REMARKABLE INDONESIAN MARKET

- **Supplying Packing Materials, Ingredients, Accessories**
- **Machinery & Equipments**
- **Setting up factories in Indonesia, a market of 250 million people. Indonesia has a large labor market and wages is still low compared to other Asian countries.**
- **Manufacturing in Indonesia – enjoy the benefit of ASEAN Economic Community.**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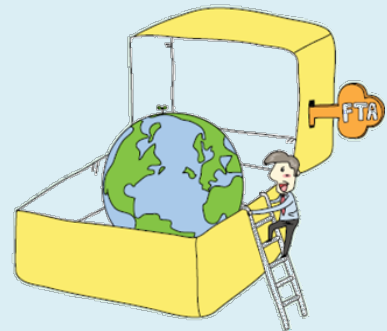
FTA 활용 방안(원산지 증명을 통한 관세 절감)

한국무역협회
양태종 관세사



Contents

- 1 FTA Overview
- 2 FTA 적용 요건
- 3 수출업체 FTA 활용 Process
- 4 사례를 통한 원산지 판정



1

FTA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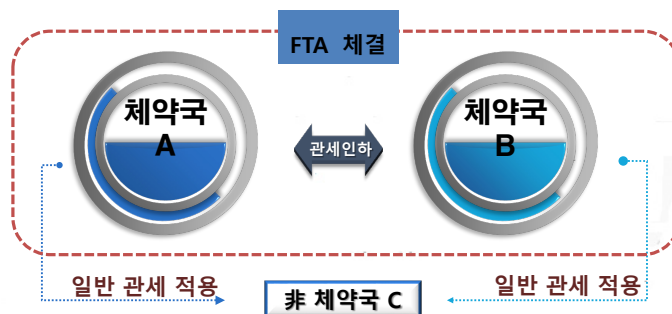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FTA ?

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FTA 체결 현황 “2014년 12월 현재, 10개 협정 48개국과의 FTA가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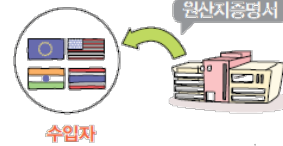
- APTA(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GCC(걸프협력회의),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MERCOSUR(남미공동시장)

Effective (47)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06.9.1), ASEAN('07.6.1), 인도('10.1.1), EU('11.7.1), 페루('11.8.1), 미국('12.3.15), 터키('13.05.01), 호주('14.12.12)
Negotiating	협상 완료 국가 : 콜롬비아, 캐나다, 중국('14.11.10) 뉴질랜드 ('14.11.17) 협상 진행중인 국가 : 멕시코, GCC,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Preparing	여건 조성중인 국가 : 러시아, MERCOSUR, 이스라엘, SACU 등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FTA 활용에 따른 관세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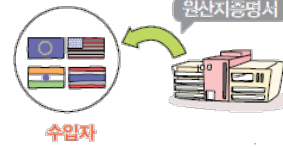
1 아시아 지역

품명	HS CODE	기본세율(FTA 협정세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향수	3303.00	7% [0%]	0% [0%]	10% [0%]	20% (민감품목)	35% [15%]
화장수	3303.00	7% [0%]	0% [0%]	10% [0%]	20% (민감품목)	35% [15%]
입술화장용 제품류	3304.10	7% [0%]	0% [0%]	10% [0%]	20% [5%]	35% [15%]
눈화장용 제품류	3304.20	7% [0%]	0% [0%]	10% [0%]	20% [5%]	35% [15%]
매니큐어용 제품류	3304.30	7% [0%]	0% [0%]	10% [0%]	20% [5%]	35% [15%]
파우더 형태 제품류	3304.91	7% [0%]	0% [0%]	10% [0%]	20% [20%]	35% [15%]
기초, 메이크업 제품류	3304.99	7% [0%]	0% [0%]	10% [0%]	20% [20%]	35% [35%]
기타의 화장품	3307.90	7% [0%]	0% [0%]	5% [0%]	-	35% [15%]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FTA 활용에 따른 관세 혜택



수입자

품 명	HS CODE	기본세율 (FTA 협정세율)					
		한-ASEAN FTA					한-인도 CEPA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라오스	브루나이	
입술화장용 제품류	3304.10	0% (0%)	20% (민감품목)	30% (9%)	20% (6%)	5% (0%)	10% (4.69%)
눈화장용 제품류	3304.20	0% (0%)	22% (민감품목)	30% (9%)	20% (6%)	5% (0%)	10% (4.69%)
매니큐어용 제품류	3304.30	0% (0%)	22% (민감품목)	30% (9%)	20% (6%)	5% (0%)	10% (4.69%)
파우더 형태 제품류	3304.91	0% (0%)	22% (민감품목)	30% (9%)	20% (6%)	5% (0%)	10% (4.69%)
기초, 메이크업 제품류	3304.99	0% (0%)	10%~20% (민감품목)	30% (9%)	20% (6%)	5% (0%)	10% (4.69%)
기타의 화장품	3307.90	0% (0%)	30% (15%)	30% (0%)	10% (4%)	0% (0%)	10% (4.69%)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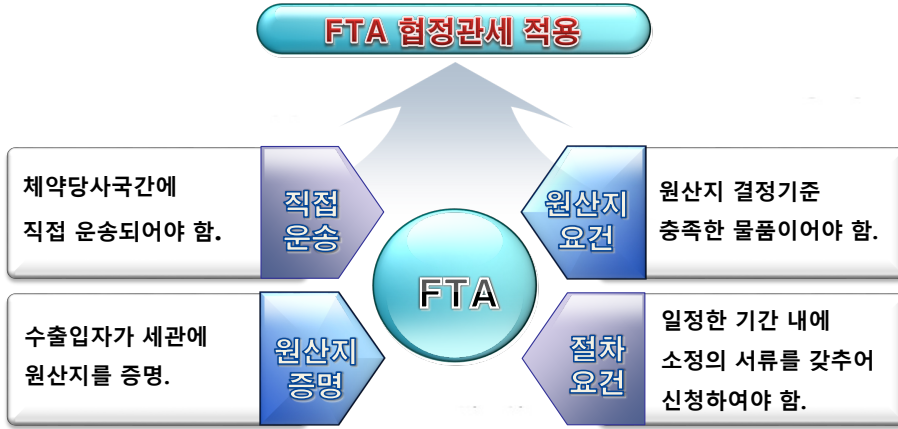


FTA 적용 요건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Application Requirements of FTA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Direct Transport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 인정함
 단,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제3국 단순 경유시 직접운송으로 간주
 ※ 단순경유 : 지리상,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하는 것으로 환적, 상품 보존 작업 이외의 가공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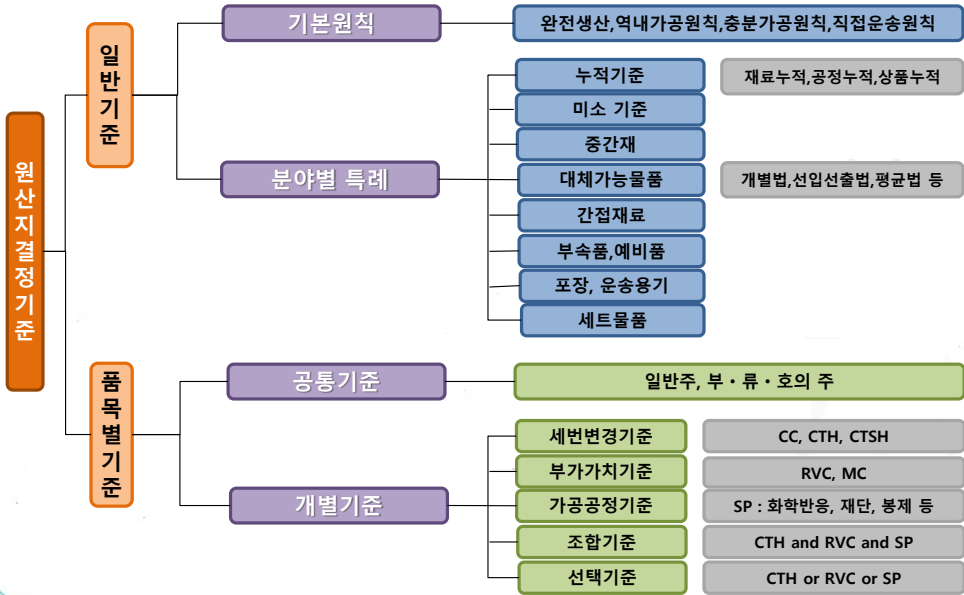


1. Name & address of shipping Agent/ Freight Forwarder		 SINGAPORE CUSTOMS 401 Harbour Road 401-02 Revenue House Singapore 099293 Tel: 65432000 Fax: 65752011 E-mail: custom@customs.gov.sg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small>Issued pursuant to Regulation of 30(1) of The Regulation of Imports & Exports Regulations</small>			
2. Details of Consignment			
3) Description of Goods			
5) Country of Origin of Goods	6) Bill of Lading No.		
7)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8) Date of Departure from Singapore		
9) Date of Discharge in Singapore		10) Date of Departure from Singapore	
11) Date of Final Destination		12) via (name of vessel & voyage No.)	
3. Declaration by Shipping Agent/Freight Forwarder			
I/We declare that			
a) the goods described above were transported to the above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from Singapore without any alteration or manipulation; and			
b) all information provided for above is true and correct.			
Authorised Signature: Name: Designation: Date:			
4. CERTIFICATION BY SINGAPORE CUSTOMS			
We certify tha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true and correct. This Certificate is issued without any prejudice or liability whatsoever on our part arising from any circumstances.			
Authorised Signature: Name: Designation: Date: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Determination of Origin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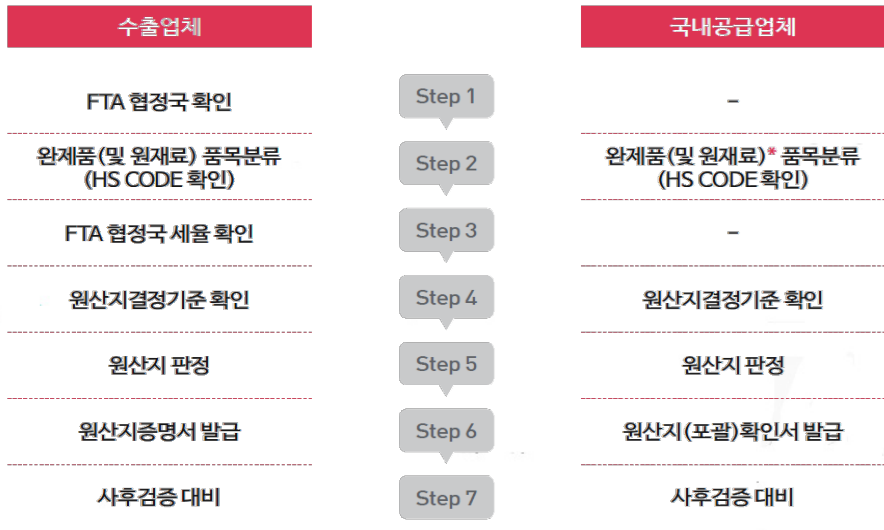
3

수출업체 FTA 활용 Process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FTA 활용 Process



*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재료에 대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함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1. FTA 협정국 확인

[FTA 협정별 대상국가]

협정명(발효일자)	대상 국가
한-칠레 FTA(2004.4.1.)	칠레
한-싱가포르 FTA(2006.3.2.)	싱가포르
한-EFTA FTA(2006.9.1.)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한-ASEAN FTA(국가별로 상이)	말레이시아-싱가포르(2007.6.1.), 베트남(2007.6.29.), 미얀마(2007.11.27.), 인도네시아(2007.12.7.) 필리핀(2008.1.1.), 브루나이(2008.7.1.), 라오스(2008.10.1.), 캄보디아(2008.11.1.), 태국(2010.1.1.)
한-인도 CEPA(2010.1.1.)	인도
한-EU FTA(2011.7.1.)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2013.7.1.EU가입)
한-페루 FTA(2011.8.1.)	페루
한-미 FTA(2012.3.15.)	50개 주, 콜롬비아특별구(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포함, 괌·사이판 제외
한-터키 FTA(2013.5.1.)	터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2. HS CODE 확인

① 의 의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정(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 HS협정)
- 관세 · 통계 · 운송 등 모든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다목적 · 다용도 · 공통(통일) 품목분류표

예시 : 제3304.10-1000호

33	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1000	립스틱
류				
호				
소호				

- ※ 류 : 앞 2자리를 의미 - HS 3304.10-1000호 중 33이 "류" 의미
- ※ 호 : 앞 4자리를 의미 - HS 3304.10-1000호 중 3304이 "호" 의미
- ※ 소호 : 앞 6자리를 의미 - HS 3304.10-1000호 중 3304.10이 "소호" 의미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2. HS CODE 확인

※ HS CODE 확인 방법

- ① 전문가 상담을 통한 확인 - HS 전문가인 관세사
- ② 법규집을 통한 확인 -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설서, 수출입통관편람을 통한 확인
- ③ 인터넷을 통한 확인 - HS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④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한 확인 - 관세평가분류원(042-714-7530)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한 확인

관세평가분류원
GLOBAL TOP 수준의
관세평가 · 품목분류 · 위험관리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 · 품목분류

▶ 인터넷 접수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검색명 : 품목분류사
전심사신청) 또는 업무처리(→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

우)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
크노2로 214(탑림동 693번지) 관세
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TEL : 042-714-7530
FAX : 042-936-3527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2. HS CODE 확인

제33류
정유/화장품

	제3301호	정유(essential oil)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등
	제3302호	공업용·음료용 방향성(芳香性) 조제품
	제3303호	향수 와 화장수 Perfumes and toilet waters.
	제3304호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기초화장용 제품류,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제3305호	두발용 제품류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제3306호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 치간 정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제3307호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실내용 조제 탈취제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2. HS CODE 확인

[화장품의 HS CODE상 분류]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3~4.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콜센터1380

<http://www.fta1380.or.kr>

FTA1380 상담 FTA Flow/지원안내 FTA활용 FTA협정정보 관세율/원산지 FTA소식 자료실 센터소개

FTA Flow 수출자 로탈수출자 수입자

효과분석 품목분류 세관확인 HS코드

관세율/원산지 | 수출(상대국의 관세율)

개별국가보기 전체국가보기

<input type="checkbox"/> 칠레	<input type="checkbox"/> 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input type="checkbox"/> 아이슬란드	<input type="checkbox"/> 노르웨이
<input type="checkbox"/>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일본	<input type="checkbox"/> 인도네시아	<input type="checkbox"/> 말레이시아	<input type="checkbox"/> 미얀마
<input type="checkbox"/> 몰디브	<input type="checkbox"/> 미국	<input type="checkbox"/>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인도	<input type="checkbox"/> EU
<input type="checkbox"/> 미국	<input type="checkbox"/> 터키			

HS코드/품목명 조회 HS코드 검색 HS검색 관세율 검색 TIP

자주 찾는 서비스

- 수출관세율
- 수입관세율
- 원산지 기준

관세율/원산지 조회방법

- 수출(상대국의 관세율)
- 수입(원국의 관세율)
- 원산지 기준
- 관정 시뮬레이션
- HS 품목분류

FTA Preview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3~4.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FTA 포털 자유무역협정 일반 정보담당

통합검색: Search

FTA일반 한-미 FTA 수출활용 수입활용 원산지검증 자료실 전체메뉴

원산지검증이란? FTA별 원산지검증방법 원산지검증 주요 체크포인트 원산지검증 이화초

한-미 FTA 통관운영지침 (2012.3.15)

FTA-PASS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

원산지확인서 발급 예로신고

관세 FTA 고객상담센터 1577-8577

FTA 관련사이트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 경제영토의 확장

FTA

FTA 상대국 품목분류 검색 원산지증명서 발급/사적 FTA 세율 (수출 - 수입) 원산지 기준 (PSR) 세계 HS 정보시스템

관세청 | UNIPASS | FTA고객지원센터 | 품목분류 | 법령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로 189 정부대전청사 1층 (우편번호 302-701) 홈페이지(오류신고)1544-1285

Copyright © 2013. 관세청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전자정부 FTA포털시스템 제작: 케이아이-아이(02-6333-0200) (02)6333-0203

FTA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적 책임이 없으므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FTA 협정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fta.customs.go.kr>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3~4.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화장품(Cosmetic)의 원산지 결정기준 : 한-아세안 FTA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됨 (CTH or RVC 40% 이상)

-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중 비역내산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 4 단위가 변경이 이루어 질 경우 원산지 충족

- 부가가치 기준 (RVC : **R**egional **V**alue **C**ontent) 40% ↑ 이상일 경우 **원산지 충족**

$$RVC = \frac{\text{FOB가격} - \text{비역내산 원재료 가격}}{\text{FOB가격}} \times 100$$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5. **원산지 판정 - 세번변경 기준**

- 세번변경기준 : 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세번)가 완제품의 HS Code(세번)와 비교하여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한 생산공정을 최종적으로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3	3	0	4	2	0	9	0	0	0
2단위(류)- CC		Change Of Chapter							
4단위 (호)-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 (소호)-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 HS 2단위 변경기준("CC" Rule) - 다른 2단위, 류(Chapter)에서 해당 류(Chapter)로의 변경
- ✓ HS 4단위 호 변경기준("CTH" Rule) - 다른 4단위, 호(Heading)로부터 해당 호(Heading)로의 변경
- ✓ HS 6단위 소호 변경기준("CTSH" Rule) - 다른 6단위, 소호(Sub-heading)로부터 해당 소호로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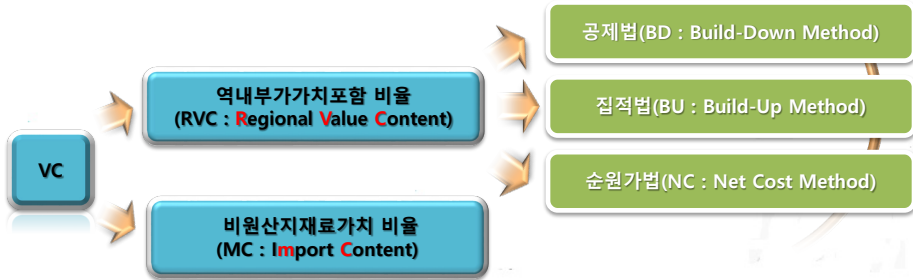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5. 원산지 판정 - 부가가치 기준

● 부가가치기준 : VC (Value Content)

최종생산공정을 수행한 국가에서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일정한 공식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한 결과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



예)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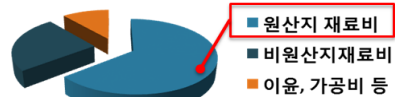
Step 5. 원산지 판정 - 부가가치 기준

RVC

· 원산국 부가가치가 조정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일 것

- 집적법:(Build-Up method: BU)

$$RVC = \frac{\text{역내산 재료비}}{\text{조정가격}} \times 100\%$$



- 공제법:(Build-Down method: BD)

$$RVC = \frac{\text{조정가격} - \text{비역내산재료비}}{\text{조정가격}} \times 100\%$$



- 순원가법:(Net Cost method: NC)

(한-미FTA 자동차 및 그 부품에 한정하여 적용)

$$NC = \frac{\text{상품가격(순원가)} - \text{비역내산재료비}}{\text{상품가격(순원가)}} \times 100\%$$



- 순원가 = 총비용 - 공제비용
- 총비용: 제조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공제비용: 관측, 마케팅, 판매 후 서비스, 로열티, 운송·포장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 비용



Step 6. 원산지 증명서 발급 - 기관 발급

구분	한-싱 FTA	한-E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터키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발급방식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자율 ->(5년후) 자율	자율발급
발급주체	-싱가폴: 세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송품장)	- 아세안: 지정기관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인도: 인도수출검 사위원회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인증수출자 (6천 유로 이하 물품은 인증없이도 자율발급 가능)	-자율증명: 수출자 및 생산자 (인증수출자, 2,000\$이하) -기관발급: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서 양식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통일증명서식 (AK서식)	통일증명서식 (KIN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증명서 유효기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언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한글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단 한-미 FTA 의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포괄사용 가능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6. 원산지 증명서 발급 - 기관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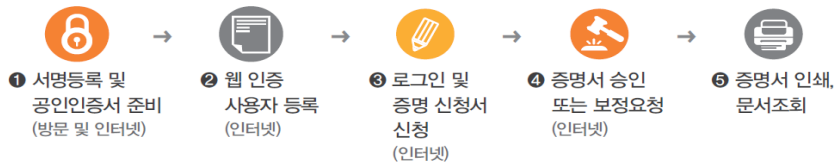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

세관 발급



- 1 Uni-Pass → 수출통관시스템 접속
- 2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선택
- 3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
- 4 발급신청내역 전송
-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승인
- 6 특혜원산지증명 신청 승인내역 조회
- 7 원산지증명서 출력(신청인)

상공회의소 발급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6. 원산지 증명서 발급 - 기관 발급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 예시]

구 분	구비서류 목록
필수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고수리필증 (수출신고번호 입력으로 대체) 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파일 등) 원산지소명서 (화면입력 or 파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구입명세서* - 자재명세서(BOM) - 생산공정명세서 - 홍보책자, 원재료수불대장 등 </div> <div style="width: 45%;"> <p>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구입명세서 - 자재명세서(BOM) - 생산공정명세서 - 원가산출내역서 등 </div> </div>
기타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기타 원재료 투입 입증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6. 원산지 증명서 발급 - 기관 발급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020-13-0436213 Reference Code: 8096-0824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JUN. 10, 2013 Vessel's name/Aircraft etc. STX HONGKONG 003S Port of Loading BUSAN PORT, KOREA Port of Discharge JAKARTA PORT, INDONESIA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R)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REPUBLIC OF INDONESIA (Importing Country) KMPD KOREA 11 JUN 2013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11 JUN 2013 Staff Eun Young You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7. FTA 사후 검증 (Origin Verification) 대비

● 수출자 & 생산자 보관 서류 - 5년간 보관

구분	보관 서류
수출자	①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② 수출신고필증 ③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④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⑤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 ⑥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⑦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생산자	①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②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서 ③ 해당 물품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④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⑤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⑥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7. FTA 사후 검증 (Origin Verification) 대비

● 원산지 검증이란?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 FTA 상대국의 증명서 발급기관, 수출자, 생산자 및 재료 공급자까지 검증대상

FTA 협정문	FTA 특례법
검증(Verifications)으로 명시	원산지에 관한 조사로 표현

● FTA협정 별 원산지 검증방법

구분	칠레	아세안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인도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미국	페루	노르웨이
			유럽연합(EU)
검증 방식	직접검증	원칙:간접검증 예외:직접검증	원칙 : 간접검증
검증 주체	수입국세관	간접:수출국 세관 직접:수입국 세관	수출국 세관 (수입국세관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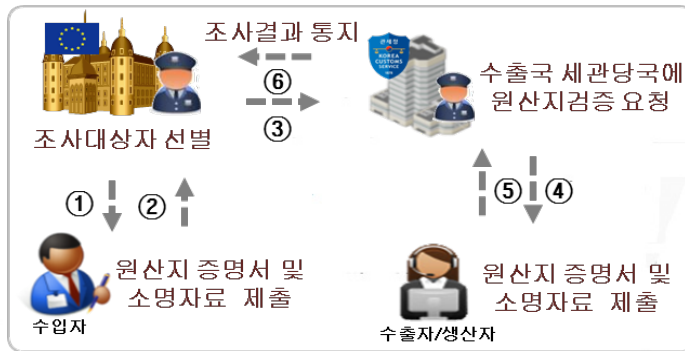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7. FTA 사후 검증 (Origin Verification) 대비

● 간접 검증

-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입국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따라 수출자 및 생산자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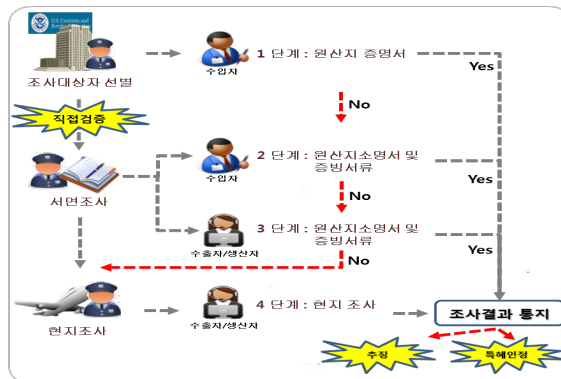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7. FTA 사후 검증 (Origin Verification) 대비

● 직접 검증 (한-미 FTA협정)

-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세관 당국이 수출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



※ 섬유 또는 의류의 원산지 검증

- ①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함께 수출자/생산자 등의 사업장 방문 및 검증지원 가능
- ② 모든 방문은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7. FTA 사후 검증 (Origin Verification) 대비

● 특혜관세 적용 배제 및 부당이득 추징

- 원산지 검증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역계약서, 공급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요구에 따른 세관 추징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명시함.
- 해외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하여 추징을 당할 경우, 손해액을 수출자에게 배상 요구하게 되고, 수출자는 이를 다시 생산자에게 요구함.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Step 7. FTA 사후 검증 (Origin Verification) 대비

● 행정 제재

구 분	위 반 내 용	
형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빙서류 허위/부정 작성/발급 ● 원산지 증빙자료 미보관 ● 사전심사시 허위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빙서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교부
	2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자료 미제출 ● 조사 거부/방해/기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수정신고 불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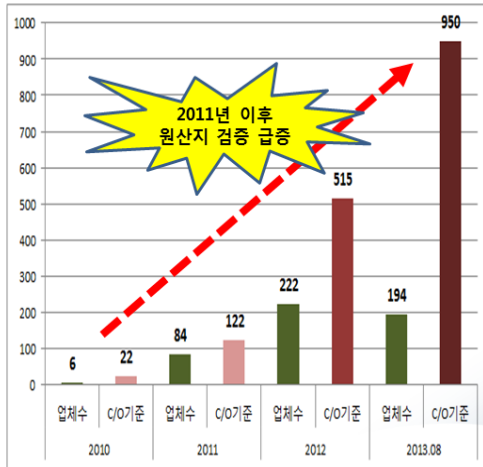
※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입증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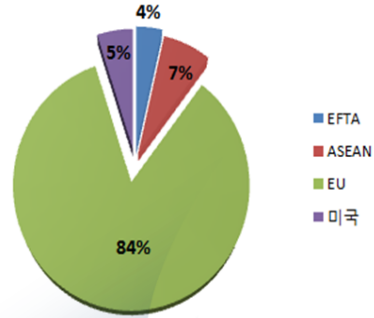
Step 7. FTA 사후 검증 (Origin Verification) 대비

□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현황



* 자료 : 관세청 (2013), 국제원산지컨퍼런스 자료

□ 협정 별 검증 현황



한-EU FTA

원산지 불인정 비중 **17%**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4

사례를 통한 원산지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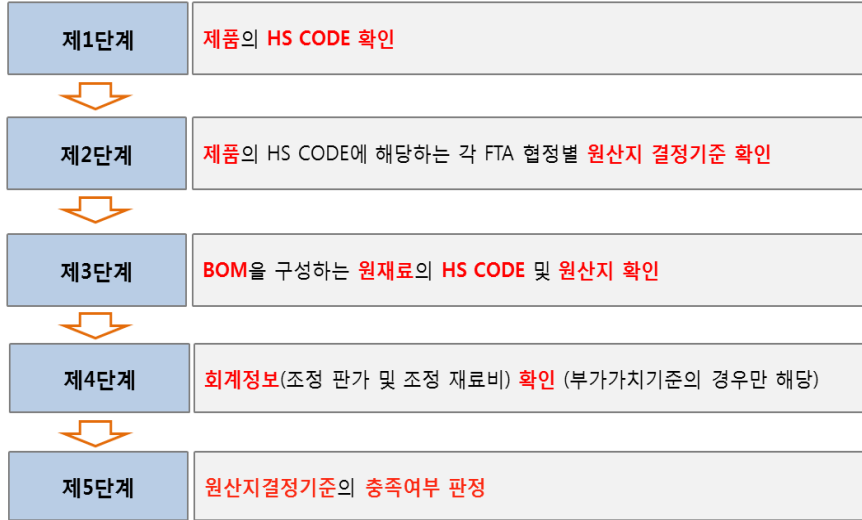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원산지 판정 사례 – Eye Stick



● 원산지 판정 절차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원산지 판정 사례 – Eye Stick



● HS CODE의 확인

	0	1	2	3	4	5	6	7	8	9
		산동물	육	어패류	낙농품	동물성생산물	산수목·꽃	채소	과실·견과류	커피·향신료
10	곡물	밀가루·곡분	종자·인삼	식물성엑스	식물성생산물	동식물성유지	육·어류제품	당류설탕과자	코코아	곡물곡분제품
20	채소과실제품	조제식료품	음료주류	사료	연초	토석류·소금	광·슬랙 회	광물성연료	무기화학품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비료	염료·페인트	향료·화장품	비누·왁스	단백질·전분	화약류·성냥	필름·인화지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40	고무	가죽	가죽제품	모피제품	목재	코르크	조물제품	펄프	지·판지	서적·신문
50	견	양모·수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필라멘트	인조스테이플	워딩·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도포직물
60	편물	편물제의류	비편물제의류	기타섬유제품	신발	모자	우산·지팡이	우모인모제품	석·시멘트	도자제품
70	유리	커석·귀금속	철강	철강제품	동	니켈	알루미늄 (유보)	납	마연	
80	주석	기타금속	금속공구	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제품	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90	광·정밀기기	시계	악기	무기	가구	완구·운동용구	잡품	예술·공예품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원산지 판정 사례 - Eye Stick



● HS CODE의 확인

대분류 (2단위)-CC	
01	산동물
02	육과 설육
03	어패류
04	낙농품
32	유연,착색제
33	정유,화장품
34	비누,왁스
35	단백질

중분류 (4단위)-CTH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5	두발용 제품류

소분류 (6단위)-CTSH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1000	립스틱
9000	기타
20	눈화장용 제품류
1000	아이섀도
9000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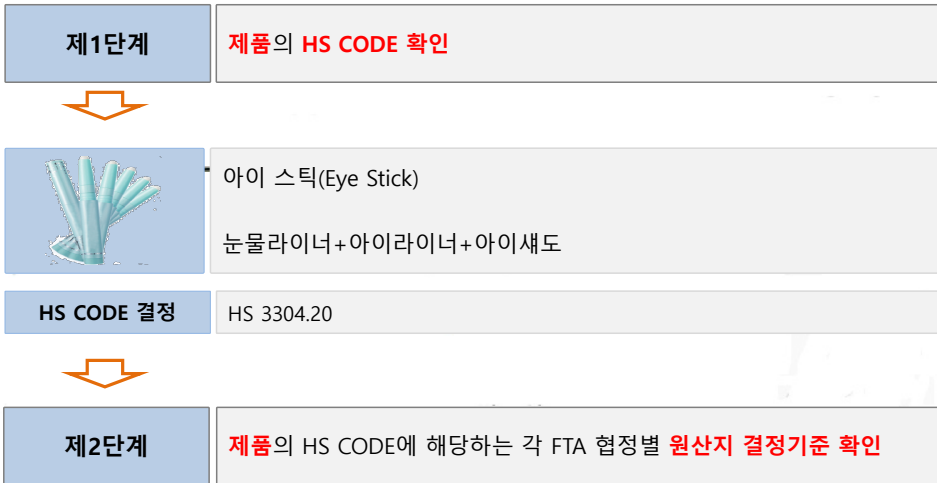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원산지 판정 사례 - Eye Stick



● HS CODE의 확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원산지 판정 사례 - Eye Stick



원산지결정 기준의 확인

- 관세청 FTA 포탈 (<http://fta.ustoms.go.kr>)을 활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1. MY메뉴에서 즐겨찾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2. 원산지결정기준(PSR) 선택

FTA포탈 자유무역협정 일단 정보마당

통합검색

HOT HS코드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포탈확인

FTA일반현황 FTA활용 원산지검증 FTA기업지원 FTA자료실 고객의소리 FTA사전확인제

원산지결정기준(PSR) 수출세율 수입세율 원산지증명서발급 인증수출자제도 E-Book Zone

FTA 통계

협정명	수출	수입
한-미	61,952,106	41,559,554
한-EU	49,740,015	56,737,591

공시사항 FTA 동향정보 FTA 교육일정

- 관세청, WCO와 원산지협력 사업 추진 [2014/02/06]
- 영세협력업체 FTA 원산지부담 세관에서 해결한다 [2014/01/29]
- 관세청, 『리튬산업 FTA 가이드』 인터넷 제공 [2014/01/28]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상품교육센터』 본격 시행 [2014/01/28]
- 한-실레 FTA 발효이후 10년 동안 양국간 교... [2014/01/28]
- 한-미 FTA 및 해외 무역통량 컨퍼런스 개최... [2013/11/13]
- 한-EU FTA 제3차 무역위원회 개최(2013... [2013/11/13]

팝업존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손쉽게 따라하기

한·타키 FTA 100% 활용하기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원산지 판정 사례 - Eye Stick



원산지결정 기준의 확인

FTA자료실

대한민국 경제영토의 확장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결정기준 선택

2. ASEAN 선택

3. HS코드 3304.20 검색

4. 원산지기준 확인

원산지결정기준

전체 All FTA

실레 Chile 싱가포르 Singapore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아세안 ASEAN 인도 India 유럽연합 EU 페루 Peru 터키 Turkey 호주 Australia 캐나다 Canada

검색 search

HS코드 HS-Code 한국 품목명 (Korea Item Name) 영문 품목명 (English Item Name)

3304.20

3304.20 스킨케어 및 조제약품의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Essential oils and resinsoids;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미용 또는 메이크업을 계통류와 기초화장용 계통류(의약품용 제외)하며, 선크림과 선크림 계통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를 계통류와 피디큐어를 계통류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품목번호 HS	분류 Division	품목명 Item	원산지기준 Preference Criterion	C/O기재방법 Described
330420	1	눈화장용 계통류 Eye make-up prepara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게르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hange to heading from any other Heading or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0 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	CTH or RVC 40%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원산지 판정 사례 – Eye Stick



● 원산지결정 기준의 확인

완전생산기준

제6. 22조 정의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상품)

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생산물.

나.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라.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밯사냥, 어로 또는 양식으로 부터 획득된 상품.

마~카 생략

타. 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 내지 차호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FTA	아이 스틱의 원산지결정기준	
	국문	약어
한-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 40%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원산지 판정 사례 – Eye Stick



● 원산지결정 기준의 확인

제1단계

제품의 **HS CODE 확인** (HS 3304.20)



제2단계

제품의 HS CODE에 해당하는 각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FTA	아이 스틱의 원산지결정기준	
	국문	약어
한-아세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 40%



제3단계

BOM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HS CODE 및 원산지 확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원산지 판정 사례 – Eye Stick



● BOM상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소요부품(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

- 완제품 품번 및 품명 : Eye Stick (제 3304.20)
- 모델명 : Eye Stick
- 적용협정 :
- 원산지결정기준 :
- 산출일자 :
- 원재료 사용내역

품명(재료명)	세번번호 (HS No)	원산지	소요량	단가	가격(원)	구성비	공급자	입증서류	비고
CANDELLA WAX DC245 /	1521.10	미상		₩ 700	₩ 700	35%	(주)OOO	세금계산서	국내공급
CYCLOPENTASILOXANE DC740 / TRIMETHILOXY	2931.90	KR		₩ 500	₩ 500	5%	(주)AAA	원산지 확인서	국내공급
EB-21 / DIBUTYL ETHYLHEXANOYL	3824.90	미상		₩ 800	₩ 800	5%	(주)CCC	세금계산서	국내공급
GP-1 / DIBUTYL LAUROYL GLUTAMIDE	2924.19	미상		₩ 900	₩ 900	10%	(주)인사	세금계산서	국내공급
KC-9805A / CALCIUM ALUMINUM LANOLIN /	3206.19	미상		₩ 1,500	₩ 1,500	20.5%	케이알 무역	거래명세서	국내공급
ISONONYL ISONANOATE LANOLIN99 /	2924.19	미상		₩ 500	₩ 500	9.5%	케이알 랜드	거래명세서	국내공급
		역내산		₩ 500	₩ 500				
		역외산		₩ 5,000	₩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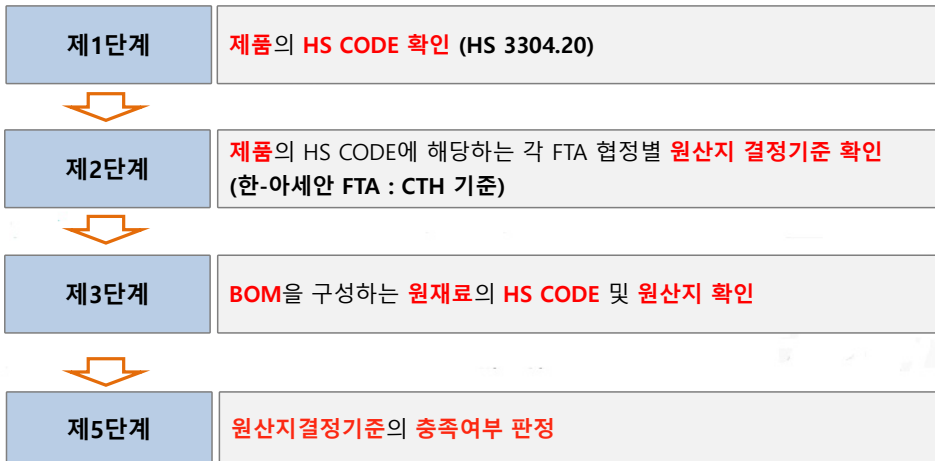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원산지 판정 사례 – Eye Stick



● BOM상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원산지 판정 사례 - Eye Stick



원산지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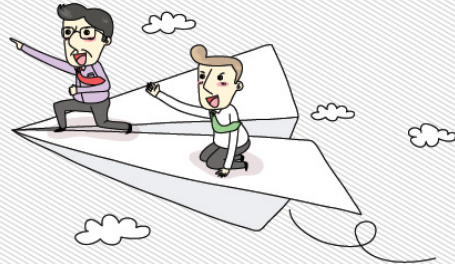
PSR(한-아세안)	구분	품목명	HS CODE	FTA 원산지	제품 HS CODE 3304.20
CTH를 충족하는가? ↓ 충족	1	CANDELILLA WAX	1521.10	미상	
	2	DC245	2931.90	KR	
	3	DC749	3824.90	미상	
	4	EB-21 / DIBUTYL ETHYLHEXANOYL	2924.19	미상	
	5	GP-1 LAUROYL	2914.19	미상	
	6	KC-9804A	3206.19	미상	
	7	LANOL99	2924.19	미상	

원산지판정

4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였고, **역내산** 판정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한국무역협회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지원 OK!**
1380 / www.fta1380.or.kr

Thank You!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Information & Business Support Center

V.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의 변화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의 변화

2014.12.22

[사] 대한화장품협회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규의 변화

1. 미백제품을 특수용도로 포함시켜 관리
2. 기사용원료리스트 발표

미백제품을 특수용도로 포함시켜 관리('13.12.16)

● 미백화장품의 범위:

피부에 미백·증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표현한 모든 화장품

※ 물리적으로 가리는 방식을 작용만을 가진 미백화장품

효능표현에 미백·증백 포함	효능표현에 미백·증백 미포함
특수용도화장품에 포함시켜 관리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따라 등록관리

● 등록 신고 절차:

현행의 특수용도화장품 규정 요구에 따라 관리

※ 물리적으로 가리는 방식을 작용만을 가진 미백화장품

- 현행의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신고심사 평가절차 참고하여 집행
- 비특수용도화장품 검사요구에 따라 검사보고서 제출
- 제품유형란에 “거반류(물리적으로 가리는 작용만을 가짐)” 라는 주를 달아 밝혀야 함

미백제품을 특수용도로 포함시켜 관리('13.12.16)

● 과도기 관리:

- 이미 등록증을 획득한 미백화장품
 - 원 등록관리부서에 등록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13.12.16 전에 화장품검사기관에 이미 접수한 미백화장품
 - 이미 검사한 항목은 별도로 다시 할 필요 없음
 - 검사항목 보충이 필요한 경우,
 - 보충 검사보고서는 반드시 화장품행정허가검사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함

※ 2015년 7월 1일부터,

특수용도화장품허가증 없이 미백제품을 생산하면 모두 위법

기사용원료리스트 발표('14.6.30)

●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

-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 : 8,783종
- 국가총국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 발표에 관한 통고(제 11호)》 ('14. 6.30)

화장품원료배합금지목록

- 사용금지표2 (1) 나열된 성분 : 1,208종
- 사용금지표2 (1) 나열된 성분: 78종
- 《화장품위생규범》 (2007년판)

● 화장품원료배합제한목록

- 제한사용표3에 나열된 사용제한 성분: 73종
- 제한사용표4에 나열된 사용제한 방부제: 56종
- 제한사용표5에 나열된 사용제한 자외선 차단제: 28종
- 제한사용표6에 나열된 사용제한 착색제: 156종
- 제한사용표7에 나열된 일시 사용허가 염색제: 93종
- 《화장품위생규범》 (2007년판)

● 이상 목록 이외의 원료는 신원료로 간주함

- 화장품 신원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장품 생산에 사용된 천연 또는 인공원료를 가리킴
-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 9조

중국화장품 법규에 대한 의견요청

1. 화장품감독관리조례(안) 공개 의견요청

※ 별첨1: 화장품감독관리조례(안) 번역본

2. 화장품라벨관리방법(안) 공개 의견요청

※ 별첨2: 화장품라벨관리방법(안) 번역본

※ 협회에서 번역을 진행하였으며 오류가 있으면 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의견요청원고)

제1장 총칙

제1조 (입법 목적)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화장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품질 안전을 보증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제2조 (적용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화장품 연구제작, 생산, 경영 및 그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제3조 (화장품 정의) 본 조례에서 화장품이라 함은 도찰, 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표면(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치아 및 구강 점막에 퍼트려 청결, 보호, 미화, 꾸밈 및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함

제4조 (직책 분담)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전국 화장품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짐. 국무원 관련 부문은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짐

제5조 (기본 원칙1: 기업주체책임원칙) 화장품 생산경영자는 화장품 품질안전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며, 반드시 법률, 법규와 표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관리를 강화, 스스로 단속을 성실히 하고, 화장품 품질안전을 보증하여야 하며, 화장품 품질안전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것에 대하여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함

제6조 (기본 원칙2: 업계자율원칙) 화장품 업계협회는 반드시 업계가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법률법규와 표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도록 지도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업계가 성실하게 건설하는 것을 촉진하고, 화장품 품질안전 지식을 보급하고 홍보하

여야 함

제7조 (기본 원칙3: 사회감독) 모든 조직과 개인은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본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화장품 감독관리 업무에 대하여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

화장품 관련 품질안전의 신고가 조사를 통해 진실한 경우,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함

제8조 (정보 공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통일된 정보 플랫폼을 통하여 법에 따라 즉시 화장품 감독관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제2장 원료 및 제품 관리

제9조 (원료목록관리) 국가는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 목록 관리를 실행함. 화장품 금지원료, 제한원료, 사용 허가한 특정원료, 기사용원료목록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하고 조정하며 공포함

제10조 (신원료 평가) 화장품 신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화장품은 반드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심사 기준을 보고해야 함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신원료의 연구역사, 이화특성, 정량구효관계(QSAR,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효능특징 등 상황을 결합하여, 분류심사표준을 제정하여야 하고 신원료의 심사평가 업무를 과학적으로 전개하여야 함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대중 건강을 보호하는 요구에 근거하여, 심사 비준된 화장품 신원료에 대하여 관찰기를 설립함. 관찰기는 4년으로, 사용을 허락한 날부터 계산함. 관찰기 내에 안전위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원료를 기사용 원료에 포함하여 관리함

제11조 (화장품 분류) 화장품은 제품용도에 근거하여 특수용도화장품과 비특수용도화장품으로 분류함

특수용도화장품은 염발, 육발, 미백, 방취 및 기타 비교적 높은 안전

위험을 가진 화장품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하고 조정하며 공포함

제12조 (관리 방식) 특수용도화장품은 반드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친 후에 생산과 수입을 할 수 있음.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권한을 위임하여 일부 특수용도화장품 심사비준 업무를 전개할 수 있음

비특수용도화장품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제13조 (제품 허가) 특수용도화장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1) 신청인 및 생산기업 기본 정보
- (2) 제품 기본 정보
- (3) 제품 처방 및 안전평가자료
- (4) 제품 표준 및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 (5) 제품 라벨과 설명서 견본 원고

수입제품은 생산국(지구) 또는 원산국(지구)에서 이미 출시 판매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제14조 (심사 비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기술 심사평가를 조직하여 전개하여야 하며, 심사평가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업무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요구에 부합한 경우, 허가를 허가하고 화장품 허가증을 발급함;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허락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함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기술 심사평가를 조직하여 전개할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현장 감사를 조직하여 전개할 수 있음

제15조 (기술 심사평가) 기술 심사평가 과정 중 신청인이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신청인이 보충

할 필요가 있는 자료 전체를 한 번 고지하여야 함. 신청인은 반드시 요구에 따라 완전한 보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고 요구에 따라 보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기술 심사평가를 중지하고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함

제16조 (변경 허가) 이미 허가한 화장품이 그 원료, 처방, 생산공정, 사용방법 등 실질성 변화가 발생한 경우, 허가인은 반드시 원 허가부문에 변경 허가 절차를 신청하여야 함; 비실질성 변화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화 상황을 원 허가부문에 등록하여야 함

제17조 (허가증 유효기간) 화장품 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임. 유효기간이 다 되어 허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기 6개월 전에 원 허가부문에 허가 연장 신청을 제출하여야 함. 본 조항 제2항목 규정의 상황을 제외하고, 허가 연장 신청을 받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화장품 허가증 유효기간 만기 전에 연장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함. 기한을 넘겨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봄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등록 허가를 해 주지 않음:

- (1) 허가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허가 연장 신청을 제출하지 못함
- (2) 화장품 강제성 국가표준이 이미 개정되어, 허가 연장을 신청한 화장품이 새로운 요구에 맞지 않음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대중 건강을 보호하는 필요에 근거하여, 이미 허가한 화장품에 대하여 재평가를 조직하여 전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가 이미 허가한 화장품이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고 밝혀진 경우, 원 증서를 발급한 부문은 화장품 허가증을 취소하고 사회에 공포함. 허가증이 취소된 화장품은 생산, 수입, 경영할 수 없음

제18조 (제품 등록)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인은 반드시 제품 출시 전에 화장품 등록정보관리시스템에 아래의 정보를 보고하여야 함:

- (1) 등록인 및 생산기업 기본 정보
- (2) 제품 기본 정보
- (3) 제품 원료 성분 정보
- (4) 제품 안전 평가 자료
- (5) 제품 표준 및 검사 보고서
- (6) 제품 라벨과 설명서 견본 원고

수입제품은 생산국(지구) 또는 원산국(지구)에서 이미 출시 판매되었다는 관련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국산비특수용도화장품 제4, 5항 자료는 기업이 검토를 위하여 비치할 수 있음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한 날부터 20일 업무일 내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등록 불허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수입 판매할 수 있음; 국산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제품 등록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의 감독 검사의 조직을 전개하여야 하며,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제19조 (신청인, 등록인) 화장품의 허가 신청인 및 등록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내 허가된 기업이어야 함

중국 내에 수출하는 화장품의 국외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 기업 법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삼아야 하고, 제품 허가 신청과 등록을 대신하며 중국 내 판매되는 화장품 품질안전의 법률책임을 짐

화장품 허가 신청인 및 등록인은 반드시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제20조 (안전평가직원) 화장품 안전 평가 자료는 반드시 안전 평가 직원이 심사하여 서명하여야 함

기업은 반드시 전문직원 또는 사회 제3자를 위탁하여 안전평가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함. 안전평가직원은 반드시 의학, 약학, 관리 등 관련 전문지식과 일정한 기한의 종사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안전평가 자료의 과학성,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제21조 (강제 표준) 화장품은 반드시 강제성 국가표준요구에 부합하여야 함. 화장품 생산기업이 국가표준보다 더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격려함

화장품 국가표준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 및 발표함. 화장품 국가표준은 반드시 대중에게 무료 검색을 제공하여야 함

제3장 생산 경영 관리

제22조 (생산허가제도) 국가는 화장품 생산허가 제도를 실행함. 화장품 생산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생산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화장품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허가의 법률규정에 따라 연장 절차를 처리함

제23조 (생산 조건) 화장품 생산기업 설립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1) 화장품 품종과 상응하는 생산장소, 환경조건, 생산시설설비가 있음
- (2) 화장품 생산과 상응하는 전문기술직원이 있음
- (3) 생산된 화장품에 품질검사를 진행하는 검사직원 및 검사설비가 있음
- (4) 화장품 안전을 보증하는 관리제도가 있음

제24조 (허가 심사) 화장품 생산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신청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자료의 진실을 보증하여야 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현장 검사를 조직함.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 결정을 내림;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허가 결정을 내리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시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권한을 위임하여 화장품 생산허가 또는 현장
검사의 관련 업무를 전개할 수 있음

제25조 (생산품질관리규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화장품 생
산품질관리규범을 제정함

화장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여야 하고, 공급상 선정, 원료검수, 생산과정 및 품질관
리, 설비관리, 제품검사, 불합격 제품 관리 등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
행하여야 함

제26조 (기업의 자체검사) 화장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생산품질관리규범
집행 상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매년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화장품 생산기업의 생산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화장품 생산품질관
리규범 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즉시 정리 조치를
취해야 함; 화장품 안전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즉
시 생산 활동을 정지하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에 보고하여야 함

제27조(건강 요구) 화장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종사 직원의 건강관리제
도를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함. 화장품 종사 직원은 반드시 매년 건강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전염병 또는 기타 화장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직원은 화장품 생산 활동에 직접 종사할 수 없
음

제28조 (원료 사용) 화장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반드시 국가 관련
표준과 요구에 부합하여야 함.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규정
한 금지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규정한 제한원료의 사용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됨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용기와 포장재료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화장품 생산기업은 사용기한이 지나고, 폐기, 회수 등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 또는 원료, 포장재료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해서는 안 됨

제29조 (위탁 생산) 위탁생산한 화장품은 위탁자가 위탁 생산한 화장품 품질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짐. 위탁자는 반드시 수탁자의 생산행위와 품질안전 등에 대하여 관리를 진행하여야 하고, 법정 요구에 따라 생산을 진행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함

수탁자는 반드시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고 상응하는 생산조건을 갖춘 화장품 생산기업이어야 함

제30조 (입하검사와 출하검사) 화장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원료,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용기와 포장재료 입하 검사기록과 제품 검사체도를 수립하여야 함. 화장품 출하 전에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합격한 후에야 출하할 수 있으며 견본품을 비치해 둠

화장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판매 기록체도를 수립하여야 함

입하검사와 판매기록 보존기한은 제품의 품질보증기한보다 짧아서는 안 됨; 품질보증기한이 2년보다 짧은 경우, 2년보다 짧아서는 안 됨

제31조 (검사 기록) 화장품 경영자는 반드시 입하검사와 증서구비체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허가증, 화장품합격증을 검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보존하고, 제품 입하대장을 수립하고, 화장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입하일자 및 공급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방식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함. 일괄배송 경영을 실시하는 화장품 경영기업은 기업 본부에서 화장품 입하검사기록과 증서요구를 일괄 진행할 수 있음. 화장품 입하검사기록은 반드시 그 지점에서 검색할 수 있어야 함

입하검사기록 보존기한은 2년보다 짧아서는 안 됨

제32조 (추적가능요구) 화장품 입하검사와 판매기록은 반드시 진실되고 추적 가능하여야 함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정보화 수단을 채택하여 제품의 추적 가능 관리를 진행하도록 격려함

제33조 (저장 운송) 화장품 경영자는 반드시 화장품 라벨의 요구에 따라化妆품을 저장, 운송, 배송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제때에 변질 또는 품질보증기한이 지난 化妆품을 처분하여야 함

화장품 경영자는 化妆품을 스스로 배합, 분리 포장하여서는 안 됨

제34조 (사용 행위) 미용미발 등 경영자가 化妆품을 사용 또는 化妆품을 소비자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化妆품 경영에 따라 관리를 진행하여야 함

미용미발 등 경영자는 반드시 化妆품이 본 조례의 요구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제품 라벨과 사용설명 요구에 따라 化妆품을 사용하여야 함

제35조 (집중거래시장) 집중거래시장의 설립자, 매장임대자와 전시판매회 개최자는 반드시 입장하는 化妆품 경영자의 자격을 심사하여야 하고, 입장하는 化妆품 경영자의 化妆품 품질안전관리책임을 지며, 정기적으로 입장하는 化妆품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化妆품 경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즉시 제지하고 소재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여야 함

제36조 (인터넷거래제3자플랫폼) 인터넷화장품거래제3자 플랫폼제공자는 반드시 化妆품 생산경영자 가입에 대하여 실명등록을 실행하여야 하고, 가입한 化妆품 생산경영자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져야 함

인터넷화장품거래제3자 플랫폼제공자가 가입한 化妆품생산경영자의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즉시 제지하고 인터넷화장품거래제3자 플랫폼제공자가 등록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여야 함. 엄중한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반드시 즉시 인터넷거래플랫폼서비스 제공을 중지하여야 함

소비자가 인터넷화장품거래제3자 플랫폼을 통하여 化妆품을 구매할

때 합법 권익에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한 화장품 생산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인터넷화장품거래제3자 플랫폼제공자가 가입한 화장품 생산경영자의 실명, 주소와 유효한 연락방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화장품거래제3자 플랫폼제공자가 배상함. 인터넷화장품거래제3자 플랫폼제공자는 배상한 후, 가입한 화장품 생산경영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음. 인터넷화장품거래제3자 플랫폼제공자가 소비자에게 더 이로운 약속을 한 경우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여야 함

인터넷화장품거래제3자 플랫폼제공자가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합법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반드시 가입한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함

인터넷화장품거래제3자 플랫폼제공자가 등록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인터넷화장품거래제3자 플랫폼제공자가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짐

제37조 (결함제품 회수 및 생산경영 중지) 화장품 생산기업이 생산한 화장품에 품질 결함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화장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관련 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기록을 회수하고 상황을 통지하여야 함. 화장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회수한 화장품에 대하여 바로잡고, 해롭지 않게 처리, 폐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화장품 회수와 처리 상황을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여야 함

화장품 경영자가 경영한 화장품에 품질결함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경영을 중지하여야 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중지를 기록하고 상황을 통지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여야 함. 화장품 생산기업이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장품 경영자는 회수에 협조하여야 함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일상 감독검사 중 화장품 품질에 결함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회수 또는 생

산경영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회수하거나 생산 경영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제38조 (수입 관리) 화장품의 수입상은 반드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서 발급한 화장품 비준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 관 통관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수입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가 합격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함. 해관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서명 발급한 수입화장품 통관서류에 근거하여 통관 절차를 처리함

제4장 라벨 및 광고 관리

제39조 (라벨 관리)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진실하고 완전하고, 규범에 맞고, 분명하여야 하고, 글자가 빠지거나 잘 붙지 않는 등의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붙이고, 절취하고, 지우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 또는 보충해서는 안 됨

제40조 (표시 내용)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적어도 아래의 내용을 표시 하여야 함

- (1) 제품 명칭
- (2) 생산자 명칭과 주소
- (3) 실제생산가공지
- (4) 화장품생산기업허가증 번호 및 제품 표준번호
- (5) 화장품등록증 번호 또는 등록번호
- (6) 전성분표
- (7) 품질보증기한
- (8) 정합량
- (9) 법률, 법규 또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규정에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기타 내용

제41조 (표시 요구) 허가상표마크, 국외기업의 생산주소 및 일반화된 화장품 전문용어 외에, 제40조에 규정된 표시내용은 반드시 규범화된

한자를 채택하여 제품 포장의 가시면에 표시를 진행하여야 함. 반드시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기타 부호로 그 내포된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가시면에 중문으로 설명을 해야 함

제42조 (금지표시내용) 화장품 라벨은 아래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

- (1) 의료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 또는 암시
- (2) 효능 과대, 허위 홍보, 동종 제품을 비하하거나 소비자에게 쉽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헛갈리게 하는 내용
- (3) 사회풍속을 위반하는 내용
- (4) 기타 법률, 법규, 규장에서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

제43조 (표시 관리) 화장품의 효능표시는 반드시 충분한 실험이나 평가 데이터 지지를 받아야 함

제품표시는 효능검증기관의 검사를 거쳐 보고서를 발급한 경우, 제품 라벨에 관련 검증 정보를 표시할 수 있음;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표시의 효능작용 내용 마지막에 “상술한 효능은 검증을 거치지 않음” 등 문구를 서술하여야 함. 글자체는 반드시 효능 표시 내용의 표시 글자체보다 작아서는 안 됨

제44조 (효능검증기관관리) 효능검증기관은 반드시 전개하는 화장품 효능검증 업무와 상응하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공포한 효능검증 지도원칙을 따라야 하며,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효능검증 업무를 전개하여야 하고, 검사보고서 또는 데이터, 결과를 위조해서는 안 됨

효능검증기관의 관련 자격증명서 및 발급한 효능검증보고서는 반드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지정한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하고, 감독을 받아들여야 함

제45조 (광고 관리) 화장품 광고는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상표, 도안 또는 기타 형식으로 제품 효능 또는 성능을 허위로 홍

보하여서는 안 되며, 제품이 의료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되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증을 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그 효능을 오해하도록 암시하여서는 안 됨

화장품 광고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서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과 제정할 것임

제46조 (연대 책임)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 개인이 허위광고 중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법 권익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힌 경우, 화장품 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짐

제5장 감독관리

제47조 (생산경영감독검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법에 따라 화장품 생산경영에 대하여 일상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 반드시 즉시 개정 명령을 내리고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생산기업이 생산허가 조건에 더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제48조 (감독검사권)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감독 검사를 진행할 때, 아래 조치를 채택할 권리가 있음;

- (1) 생산경영장소에 진입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함
- (2) 생산경영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샘플링 검사를 진행함
- (3) 관련 계약서, 어음, 경리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 복사, 열람
- (4)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및 관련 증거 자료, 위법 사용한 화장품 원료 및 포장재료 등 관련 물품, 위법 생산 경영에 사용 또는 오염된 공구, 설비 차압
- (5) 위법으로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한 장소 차압

제49조 (검사요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감독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고, 감독검사직원과 검사받은 기관 책

임자의 서명을 받은 후 자료를 분류하여 보관함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감독 검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검사 중 알게 된 검사받은 사람의 상업 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

제50조 (샘플검사 감독)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생산, 경영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샘플링 감독을 진행하여야 함. 샘플링 감독은 반드시 샘플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검사비용과 기타 어떠한 비용도 받아서는 안 되며, 필요한 비용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지출함

신고가 반영되거나 일상 감독 검사 중 비교적 많은 문제가 발견된 화장품에 대하여, 현금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중점적으로 샘플링 감독을 진행할 수 있음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화장품 품질안전감독 샘플링 결과를 공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화장품 품질안전 공고를 발표하여야 함

제51조 (피검사자요구) 화장품 피검사자 또는 개인은 반드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과 협력하여 샘플링 감독을 전개하여야 함

제52조 (검사기관 요구) 화장품 검사에 종사하는 기관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자격을 획득하여야 함

화장품 검사기관의 자격인정조건과 검사규범 및 관련 표준품, 참고품 관리 규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하고 감독을 실시함

제53조 (보충 검사) 법정 검사방법이 없을 때,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치고, 화장품 검사기관은 검사방법과 검사항목을 보충할 수 있음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비준한 보충검사방법과 검사항목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인정한 화장품 품질안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음

제54조 (이의 재검) 관계자가 본 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샘플링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샘플링 결과를 받은 날부터 7 업무일 내에 재검사 기관에 서면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고지함.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처음 검사한 기관에 통지하고 즉시 남아 있는 샘플을 재검사기관에 보내야 함. 재검사기관이 발급한 재검사 결론을 최종 검사 결론으로 여김. 재검사기관과 처음 검사한 기관은 동일한 기관이어서는 안 됨

재검사기관 명단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공포함

제55조 (부작용 모니터링제도) 국가는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제도를 실행함

화장품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그 생산, 경영하는 화장품 부작용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사용하는 화장품과 관련된 심각하거나 단체성 부작용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즉시 부작용 모니터링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화장품과 관련된 심각하거나 단체성 부작용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즉시 부작용 모니터링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사회조직과 개인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또는 부작용 모니터링 기관에 사용하는 화장품과 관련된 부작용 가능성을 보고하도록 격려함

제56조 (행정 처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동급 위생행정부문과 관련부문과 화장품 부작용에 대하여 즉시 처리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조직하여야 하며, 동종제품 화장품에 대하여 모니터링 강화를 조직하여야 함

이미 심각하거나 단체성 부작용이 발생한 화장품에 대하여,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생산, 경영 중지의 긴급한 관리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제57조 (국외 검사)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수입화장품의 국외 생산기업에 대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국외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지불함

제58조 (신용 감독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화장품 생산경영자 신용과일을 수립하여야 하고, 불량신용기록이 있는 경우 감독검사와 샘플링 감독 빈도를 증가시켜야 함

제59조 (전문가 자문위원회)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과학연구, 의료, 검사,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화장품 감독관리를 지지하기 위하여 화장품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제6장 법률책임

제60조 (특별히 심각한 위법생산행위)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위법 소득, 위법 생산된 화장품과 전문적으로 위법 생산에 사용된 도구, 설비 등 물품을 몰수함; 위법 생산된 화장품 물건가치금액이 10,000원이 되지 않는 경우, 20,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물건가치금액이 10,000원 이상인 경우, 물건가치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5년 내에 관련 책임자 및 기업이 제출한 화장품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1) 제품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화장품을 생산한 경우

(2)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화장품을 생산한 경우

(3) 화장품 금지원료 사용,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 신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한 경우

(4) 위조화장품 생산 또는 타인의 공장명칭, 공장주소, 생산허가증, 허가증을 위조하여 화장품을 생산한 경우

(5) 제품 효능에 대하여 허위 표시를 한 경우

앞의 제1, 3, 4, 5항 상황이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원 발급부문에

서는 화장품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함. 기업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는 5년 내에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제61조 (심각한 위법생산행위)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위법 소득, 위법 생산된 화장품을 몰수함; 위법 생산된 화장품 물건가치금액이 10,000원이 되지 않는 경우, 1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물건가치금액이 10,000원 이상인 경우, 물건가치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을 중지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원 발급부문이 화장품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기업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는 3년 내에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1) 강제성 표준, 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가, 등록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생산한 경우

(2) 허가 또는 등록요구에 따라 생산하지 않았거나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따라 생산품질관리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유효한 프로세스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제한원료 범위를 초과하거나 벗어난 원료로 화장품을 생산한 경우

(4) 화장품 사용기한을 변경하거나, 초과한 사용기한, 폐기, 회수 등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한 경우

(5)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용기와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한 경우

(6)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화장품 생산기업이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회수 실시를 명령했는데 회수하지 않은 경우

(7) 본 조례 규정 요구를 갖추지 않은 기업에 위탁하여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수탁인의 생산행위에 대하여 관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8) 허가 범위를 벗어난 화장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제62조 (일반 위법생산행위)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개정 명령을 내리고, 5,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원 발급부

문이 화장품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생산을 중지하고 휴업을 명령함

(1) 화장품 생산기업의 생산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화장품 품질관리 시스템요구에 더는 부합하지 않고,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생산 중지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라벨이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생산한 경우

(3) 요구에 따라 화장품에 대하여 출하 검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위조, 변조한 경우

앞 항목의 제2, 3항 상황이 있는 경우, 위법 생산한 화장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함

제63조 (특별히 심각한 위법경영행위)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위법 소득, 위법 경영한 화장품을 몰수함; 위법 경영한 화장품 물건가치금액이 1,000원이 되지 않는 경우, 2,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물건가치금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 물건가치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기업 책임자와 관련 책임직원은 3년 내에 화장품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1)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이 화장품을 생산하여 경영한 경우

(2) 화장품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특수용도화장품을 경영한 경우

(3) 등록을 거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경영한 경우

(4) 금지원료,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은 신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경영한 경우

(5) 위조화장품, 원산지를 위조한 화장품, 타인의 공장명칭, 공장주소, 등록증을 사칭하여 생산한 화장품을 경영한 경우

(6) 화장품 사용기한을 마음대로 고친 경우

(7) 화장품을 마음대로 배합 또는 분리 포장한 경우

앞 항목 제7항 상황이 있는 경우, 위법 배합 또는 분리 포장에 사용된 화장품, 원료, 포장재료와 설비를 몰수함

제64조 (심각한 위법경영행위)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위법 소득, 위법 경영한 화장품을 몰수함; 위법 경영한 화장품 물건가치금액이 1,000원이 되지 않는 경우, 1,000원 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물건가치금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 물건가치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1) 강제성 표준, 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가, 등록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생산한 경우

(2) 용량 초과 또는 사용제한 범위를 초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화장품을 경영한 경우

(3)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경영한 경우

(4) 초과한 사용기한, 폐기, 회수 등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 또는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화장품을 경영한 경우

(5)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이 직접 접촉하는 용기와 포장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화장품을 경영한 경우

(6) 허가 범위를 벗어난 생산기업이 생산한 화장품을 경영한 경우

(7) 미용미발 등 경영자가 제품라벨과 사용 설명서를 요구에 따르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한 경우

(8)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경영 정지 명령을 내리고 판매 중지 등 명령을 내린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5조 (일반 위법경영행위)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개정 명령을 내리고 위법 경영한 화장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1) 라벨이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경영한 경우

(2) 등록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경영한 경우

(3) 요구에 따르지 않고 검사한 화장품 또는 검사보고서를 위조한 화장품을 경영한 경우

제66조 (사전경고의 위법생산경영행위)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

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줌; 개정하지 않는 경우, 화장품 생산기업에 5,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장품 경영자에게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원 발급 부문에서 화장품 허가증을 회수하고 취소하며, 생산을 중지하고 휴업을 명령함

(1) 화장품 생산기업이 요구에 따르지 않고 생산 품질관리규범 집행 상황 연도를 스스로 조사하여 보고한 경우

(2) 화장품 생산기업이 본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원료,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재료 입하검사와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거나 관련 기록이 진실 되지 않고 추적할 수 없는 경우

(3) 화장품 경영자가 본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고 화장품 입하검사기록, 증서요구, 판매기록, 사용기록 등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거나 관련 기록이 진실 되지 않고 추적할 수 없는 경우

(4) 화장품 생산기업이 본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직원 건강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한 경우

(5)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본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부작용 보고를 하거나,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기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전개한 부작용 조사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67조 (허위신고, 허가사취)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허위 수단으로 화장품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원 발급부문은 이미 취득한 허가증을 취소하며, 5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5년 내에 관련 책임자 및 기업에서 제출한 화장품 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안전평가직원 등 직접 책임직원은 5년 내 화장품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화장품 관련 허가증을 위조, 변조, 거래, 임대, 대여하는 경우, 원 발급부문은 몰수 또는 취소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함; 위법 소득이 10,000원 이상인 경우, 1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위법 소득이 10,000원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림

위조, 변조, 구매, 임차, 차입한 화장품 관련 허가증에 근거하여 생산 경영한 화장품이 화장품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본 조례 화장품허가증 미취득 생산경영화장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68조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허위 등록)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기한 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내리며, 등록하지 않고 출시 판매한 화장품(이미 포장하고 판매를 대기하고 있는 완성품 포함)과 위법소득을 몰수함;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은 경우, 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과 제품명을 공고하고 20,000원의 벌금을 부과함

등록할 때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등록한 기관과 제품명을 공고하고, 생산경영한 화장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원 발급부문에서 이미 취득한 화장품 생산허가증 등 허가증을 취소하고, 안전평가직원 등 직접 책임직원은 5년 내에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제69조 (위탁과 수탁 생산책임) 본 조례에서 규정한 화장품 생산행위는 위탁생산과 수탁생산 행위를 포함함. 본 장은 위법생산 화장품 관련 법률책임 조항이고, 위법소득을 각각 계산한 것을 제외하고 위탁인과 수탁인에게 적용됨

수탁인이 본 조례 화장품 생산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증거가 있고, 안전 조사 처리 중 적극적으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협조하여 위탁인을 조사하면 처벌을 경감할 수 있음

제70조 (집중거래시장)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집중거래시장의 설립자, 매장임대자와 전시판매회의 개최자가 입장하는 화장품 경영자의 자격을 심사하지 않거나 검사,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50,000원 이상 2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집중거래시장, 임대판매장, 전시판매회에서 판매된 본 조례 규정에 부

합하지 않은 화장품이 집중거래시장의 설립자, 매장임대자와 전시판매회 개최자가 입장하는 화장품 경영자의 진실 명칭, 주소와 연락처 등 추적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집중거래시장의 개설자, 매장임대자와 전시판매회의 개최자가 본 조례 규정의 상응하는 법률 책임을 져야 함

제71조 (인터넷거래제3자플랫폼) 인터넷화장품거래 제3자플랫폼 제공자가 본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고 가입한 화장품 생산경영자에 대하여 자격검사, 실명등록을 진행하지 않거나 보고,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 제공 정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50,000원 이상 2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인터넷거래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한 화장품이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인터넷화장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가입한 화장품 생산경영자의 진실 명칭, 주소와 연락처 등 유효한 추적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화장품거래 제3자플랫폼제공자는 본 조례 규정에 상응하는 법률 책임을 짐

제72조 (엄중처벌경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본 조례 규정의 처벌 정도 내에서 엄중히 처벌함:

- (1) 임산부, 영유아 및 아동을 주요 사용 대상으로 하는 위조 또는 불합격 화장품을 생산, 경영하는 경우
- (2) 가짜 또는 불합격 화장품을 생산, 경영하여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위법 행위로 생산, 경영하여 처리 후 2년 내에 재범한 경우
- (4) 감독검사를 거절, 도피하거나 관련 증서 자료를 위조, 소각, 은닉하거나 마음대로 압류품을 사용한 경우

제73조 (가벼운 처벌) 화장품 경영자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경영하는 모든 화장품이 위법 생산, 수입인지 불합격인지 모름을 증명하는 경우, 그 경영한 화장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함; 기타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제74조 (광고 처벌) 본 조례 화장품 광고관련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광고관리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함

허위화장품 광고를 발표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해당 화장품을 일시 판매 중지를 결정하고 사회에 공포함; 해당 화장품을 계속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위법소득, 위법 판매한 화장품을 몰수하고, 20,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제75조 (검사기관 책임) 화장품 검사기관이 허위 검사보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자격을 부여한 주관부문은 검사자격을 취소함; 5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함;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직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파면하거나 면직을 처벌함; 면직 처벌을 받은 경우, 처벌 결정된 날부터 10년 내 화장품 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제76조 (심사, 부작용모니터링기관 책임) 화장품기술심사기관, 화장품부작용모니터링기관이 본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직책을 이행하고, 심사, 모니터링 업무에 중대한 실수를 초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개정을 명령하고, 비평을 통보하며 경고를 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직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강등, 파면하거나 면직을 처벌함

제77조 (자격 처벌) 화장품생산경영자, 검사기관이 화장품 생산경영관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화장품 검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직원을 고용하여 관리, 검사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관련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함

제78조 (감독검사거절책임)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및 그 업무직원이 법

에 따라 감독검사, 샘플링 감독을 전개하는 것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생산중지 영업중지를 명령하고 2,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 취소함; 위법치안관리행위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림

제79조 (전체조항처벌) 본 조례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개정을 명령하고 30,000원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제80조 (규범처벌자유재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및 그 업무직원은 반드시 본 조례 규정의 처벌 종류와 정도에 따라 위법행위의 성질과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함

제81조 (감독관리직원 책임추궁)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또는 기타 관련부문이 화장품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감찰기관 또는 임면기관이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직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경고, 잘못을 기록 또는 중과실을 기록하는 처벌을 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강등, 파면하거나 면직을 처벌함

제82조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 신체,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짐

제7장 부칙

제83조 본 조례 아래 용어의 합의:

화장품 신원료라 함은 화장품 기사용원료명칭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천연 또는 인공 원료를 가리킴

화장품 라벨이라 함은 화장품 판매포장에 붙이고 연결하거나 인쇄한 문자, 숫자, 부호, 도안을 가리킴

판매 포장 내에 둔 설명서는 화장품 라벨의 연장으로 봄

화장품 부작용이라 함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피부 및 기타 부속기관의 병리 변화, 및 인체 국부 또는 전신의 손해를 가리킴

생산, 직업성으로 화장품 및 그 원료를 접촉하거나 가짜, 불합격 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병리 변화 또는 손해는 본 조례에서 말하는 부작용에 속하지 않음

물건가치금액은 위법 생산, 경영화장품(기매출과 미매출 포함)의 표시가격 총액을 가리킴; 표시가격이 없거나 비매품, 시용품이라 밝힌 경우, 동종 화장품의 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함. 2종 이상 화장품 또는 화장품과 보건식품 등 기타 제품으로 구성된 세트 제품을 함께 생산, 판매하여 화장품이 각각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가격에 따라 계산함; 화장품이 단독으로 표시가격이 없거나 증정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세트 제품의 표시가격으로 계산함

제84조 면세지역, 자유무역구역 등 해관 특수 감독관리구역 내의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은 본 조례에 적용됨

제85조 본 조계에서 규정한 화장품 행정허가 및 수입화장품 검사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 표준은 국무원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함

제86조 본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함. 1990년 1월 1일 실행한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동시에 폐지됨

별첨2.

《화장품라벨관리방법》

(의견요청원고)

제1장 총칙

제1조 (입법목적) 화장품 라벨표시 관리를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함

제2조 (적용범위)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화장품 라벨 관리에 본 방법을 적용함

수출 판매만 하는 화장품 생산, 라벨은 반드시 수입국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제3조 (정의) 본 방법에서 라벨이란 판매 포장 위에 붙이고 연결하거나 인쇄하는 문자, 숫자, 부호, 도안 및 판매 포장 내에 넣는 설명서를 말함

제4조 (감독관리부문)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전국 화장품 라벨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짐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화장품 라벨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짐

제5조 (원칙요구)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진실, 정확, 과학, 합법적이어야 하고, 비준 또는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제6조 (정보공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주동적으로 허가 또는 등록 화장품의 라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대중이 검색하여 감독하게 제공함

제7조 (라벨요구)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기재 표시된 내용이 완전하고

명확함을 확보하여야 하고, 인쇄된 글자가 벗겨지거나 잘 붙지 않는 등의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붙이고, 절취하고, 지우고 고치는 등 방식으로 고치거나 보충하여서는 안 됨

제8조 (표시내용) 화장품 라벨은 적어도 아래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1) 제품 명칭
- (2) 생산자 명칭, 주소
- (3) 실제생산가공지
- (4) 화장품 생산기업 위생허가증 번호 및 제품 표준번호
- (5) 비준번호 또는 등록번호
- (6) 전성분표
- (7) 품질보증기한
- (8) 정함량
- (9) 법률, 법규 또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규정한 표시의 기타 정보

정함량이 15g 또는 15ml보다 크지 않은 화장품은 제품 명칭, 생산자 명칭, 정함량, 품질보증기한, 비준번호 또는 등록번호만 표시가 필요하고, 본 조의 제 1항 기타 내용은 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음

투명 포장을 사용하는 화장품, 판매 포장을 통과하여 내포장 또는 용기 상의 모든 또는 본 조 제1항 표시 내용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판매 포장에 상응하는 내용을 중복하여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제9조 (금지규정) 화장품은 아래 내용의 표시를 금지함

- (1) 구체적인 의료 작용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2) 효능을 과대하고, 허위 홍보하고, 동종 제품을 폄하거나 소비자가 쉽게 오해하거나 헛갈리게 하는 내용
- (3) 사회 풍속을 위반하는 내용
- (4) 기타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에서 표시를 금지한 내용

제10조 (창의용어) 화장품 라벨에 아직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는 창의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전시면에 동일한 글자

크기로 해당 창의용어의 구체적인 함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함

제11조 (표시문자요구) 허가상표표시, 국외기업의 생산주소 및 오래 사용하여 일반화 된 화장품 전문용어 외에, 제 8조에 규정한 표시내용은 반드시 규범 한자를 택하여 제품포장의 가시면에 표시를 진행하여야 함. 반드시 외국어 문자 부호를 사용하여야 하거나 또는 기타 부호를 사용하여야 그 함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가시면에 중문으로 설명을 하여야 함

국산화장품 라벨 중 한자 표시내용은 기타 종류 문자로 전부 또는 일부 번역할 수 있으며, 동시에 표시할 때 상응하는 내용의 표시에 대하여, 기타 종류 문자의 글자체는 한자 글자체보다 커서는 안 됨

제12조 (명칭요구) 화장품은 반드시 유일한 제품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 명칭은 상표명, 통용명과 속성명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아래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함

- (1) 상표명은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화장품 중 본 방법 제9조 금지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허가 상표와 허가를 거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
- (2) 통용명은 반드시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제품 원료를 밝히거나 제품 용도, 사용 부위 등의 문자를 서술할 수 있음. 제품 원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효능은 반드시 제품 용도와 일치하여야 함
- (3) 속성명은 반드시 제품의 진실한 물리성상 또는 외관 형태를 밝혀야 함. 관습, 습관적으로 사용한 화장품 명칭은 통용명, 속성명을 생략할 수 있음. 다른 제품의 상표명, 통용명, 속성명이 일치할 때, 기타 표시가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속성명 뒤에 주를 달아 밝혀야 하는데, 색깔 또는 색호, 자외선차단지수, 향, 적용 성질, 피부 또는 특정집단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제13조 (명칭표시요구) 화장품에 표시하는 제품 명칭은 반드시 비준 또

는 등록 명칭과 일치하여야 하고,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제외하고 제품 명칭의 표시 글자체는 판매 포장의 다른 표시 글자체보다 작아서는 안 됨

화장품의 명칭은 반드시 판매 포장 전시면의 돋보이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고, 만약 화장품 판매 포장의 형태, 면적 등 원인으로 판매 포장의 전시면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시면에 표시할 수 있음

제14조 (생산자 명칭과 주소 합의) 화장품 표시의 생산자 명칭과 주소는 법에 의거하여 제품품질안전을 책임지는 생산기업과 구체적으로 생산 행위를 실시하는 실제생산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하고, 수입화장품은 또한 해당 제품안전을 책임지는 중국 내의 기업 명칭과 주소를 포함함

화장품 표시의 실제생산기업은 내용물이 접촉하는 마지막 공정 제작을 완성하는 기업임. 실제생산기업이 국내기업인 경우, 국산화장품 요구에 따라 라벨 표시를 진행하고, 실제생산기업이 국외기업인 경우, 수입화장품 요구에 따라 라벨 표시를 진행함

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독립적으로 질 수 없는 그룹회사의 지사이거나 생산기지인 경우, 화장품 라벨의 기업 명칭, 주소는 법률책임을 지는 그룹회사의 명칭과 주소임

제15조 (생산자 명칭과 주소 표시) 화장품 생산자 명칭과 주소는 아래 규정에 따라 표시함

- (1) 생산기업이 자주적으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기업 명칭, 주소를 표시함
- (2) 생산기업이 실제생산기업에 위탁하여 화장품을 생산하는 경우, 반드시 생산기업과 실제생산기업의 명칭, 주소를 동시에 표시하여야 함
- (3) 생산기업이 국내기업인 것을 제외하고, 수입화장품은 반드시 해당 제품 안전 책임을 지는 중국 내 기업 명칭 및 주소를 동시에 표시하여야 함

위탁가공제품이 여러 실제생산기업이 존재하고, 판매포장의 형상 또는 면적의 원인으로 제품 포장 가시면에 실제생산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 포장 가시면에 안내 정보를 표시하는 동시에 설명서에 상세한 명칭 및 주소의 방식으로 실제생산기업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음

제16조 (실제생산가공지의 표시) 화장품 라벨 중의 실제생산가공지는 실제생산기업의 소재지를 가리킴. 국산화장품 실제생산가공지는 반드시 행정구역에 따라 적어도 성급 지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화장품 실제생산가공지는 반드시 국가 또는 지역(홍콩·마카오·대만)을 표시하여야 함

제17조 (화장품 허가로트번호 및 등록번호 표시) 국산특수용도화장품 및 수입화장품 비준번호 및 등록번호는 심사비준기관에서 발급한 비준번호 또는 등록번호에 근거하여 표시를 진행함

국산비특수용도화장품 출시 6개월 전에 기업은 국산비특수용도등록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자동으로 생성되는 제품등록번호를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등록번호를 획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국산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리시스템은 자동으로 해당 등록번호를 취소할 것임

제18조 (화장품 성분 표시)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전성분표를 표시하여야 함. 표시방법 및 요구는 반드시 국가표준 《소비품사용설명 화장품 통용라벨》(GB5296.3-2008)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제19조 (효능, 안전 표시 및 인증 표시) 화장품의 효능 표시는 반드시 과학, 진실, 정확하여야 하고, 충분한 실험 또는 평가 데이터의 지지가 있어야 함

제품 표시가 효능평가 검증기관의 실험을 거쳐 보고서를 발급한 경우, 제품 라벨에 관련 평가 검증 정보를 표시할 수 있음. 평가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효능 작용을 밝힌 내용 마지막에 “상술한

효능은 평가 검증을 거치지 않음” 등 문구를 적어 밝혀야 하며, 글자체가 효능작용을 밝힌 내용의 표시 글자체보다 작아서는 안 됨

제20조 (효능평가검증기관 관리) 효능평가 검증기관은 반드시 그 전개하는 화장품 효능평가 검증업무에 상응하는 기본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공포한 효능평가 안내원칙에 따라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효능평가 검증업무를 전개하여야 함

효능평가 검증기관은 반드시 그 발급한 효능평가 검증보고서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고, 검사보고서 또는 그 데이터, 결과를 위조, 변조하여서는 안 됨

효능평가 검증기관의 관련 자격증명서 및 그 발급한 효능평가 보고서는 반드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지정한 홈페이지에 주동적으로 공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함

제21조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표시) 품질보증기한은 반드시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이거나 동시에 표시하여야 함

- (1)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 (2) 생산로트번호와 사용기한일자

생산일자 또는 생산로트번호는 반드시 중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네 자리 수 연도,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의 순서로 차례대로 배열하여 표시를 진행하며, 내용물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원포장에 인쇄하여야 함. 생산로트번호 중 기타 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년, 월, 일 등 표시 정보 뒤에 알파벳 접미사를 더 표시할 수 있음

제22조 (주의사항 경고용어 표시규정) 아래 몇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경고용어를 표시하여야 함

- (1) 법규, 규장, 표준, 규범에 화장품 사용제한물질, 사용제한방부제, 사용제한자외선차단제, 잠시 사용을 허가한 염색제에 대한 경고용어와 안전사항관련 표시요구가 있는 경우
- (2) 법규, 규장, 표준, 규범에 아동 등 특수집단에 적용되는 화장품에 대해 표시를 요구하는 관련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

- (3) 매니큐어, 리무버, 손톱강화제, 가스충진 제품 등 가연성 화장품은 반드시 방화 또는 폭발의 안전경고용어를 표시하여야 함
- (4) 법규, 규장, 표준, 규범에 기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안전경고 용어, 사용방법 또는 보존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23조 (기타 표시사항 안내어 규정) 법규, 규장, 표준과 규범에 요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방법, 사용적합자, 사용부적합자, 사용부위, 사용 불가부위는 안내어를 채택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음
주의사항, 경고용어는 반드시 안내어를 표시하여야 하고, 규범 중문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함

제24조 (표시 변형 금지) 화장품은 아래 형식을 통해 표시 변형을 해서는 안 됨

- (1) 상표, 글자체 크기, 색상 차이 또는 암시성의 언어, 도형, 부호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함
- (2) 사용한 원료의 효능 표시를 통하여 제품이 실제로 갖추고 있지 않거나 표시를 허가하지 않는 효능을 암시함
- (3) 중국 정부부문에서 인가하지 않은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화장품 안전 및 효능 관련 표시를 진행함
- (4) 기타 암시 형식으로 본 방법 제 9조에서 금지한 표시의 내용을 표시함

제25조 (라벨 변경 절차) 제품이 이미 비준 또는 등록된 라벨표시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함

- (1) 국산비특수용도화장품, 갱신내용이 제품안전성 및 효능표현 방면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국산특수용도화장품과 수입화장품이 제품라벨표시 갱신이 필요한 경우, 생산자는 갱신하려는 라벨표시를 지정된 인터넷 등록시스템에 올린 후, 제품을 즉시 생산 판매할 수 있음
- (2) 국산특수용도화장품 및 수입화장품이 제품라벨표시를 변경하려 하고, 갱신 내용이 제품안전성 및 효능표현 방면 변경과 관련된 경

우, 생산자는 반드시 갱신하려는 라벨표시를 동일하게 지정한 인터넷 등록시스템에 올려야 하고, 원 제품 심사비준부문이 20 업무일 내에 정리 개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갱신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음

제26조 (라벨표시 위법 회수) 화장품 생산경영자는 본 방법 라벨표시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생산 경영한 화장품에 대하여 회수 의무를 지고 있음

화장품라벨표시가 본 방법 제 9조, 제 19조, 제 24조 규정을 위반하고,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제때 주동적으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 기업 소재지 성급 이상 화장품 감독관리부문은 회수 명령을 공고할 수 있음

제27조 (법률책임) 본 방법 제 5조, 제 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개정 명령을 내리고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은 경우, 1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제28조 (법률책임) 본 방법 제 8조, 제 10조, 제 11조, 제 12조, 제 13조, 제 14조, 제 15조, 제 16조, 제 17조, 제 18조, 제 21조, 제 22조, 제 23조, 제 2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개정 명령을 내리고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은 경우, 3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제29조 (법률책임) 본 방법 제 9조, 제 19조, 제 2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개정 명령을 내리고 1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 28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 따라 처리함

제30조 (법률책임) 본 방법 제 2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개정 명령을 내리고 효능평가 검증보고서를 발급한 기관에 대하여 10,000원 이하 3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제31조 (법률책임) 라벨표시정보가 제품원산지 위조, 타인 공장명, 공장 주소 등 관련 정보 위조 또는 사칭에 속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 5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32조 (명사 해석 및 보충 설명) 호텔, 목욕, 미용미발 등 서비스 소비 장소에서 제공하는 화장품 및 상업 활동 중 무료로 주거나 시용 등 형식으로 제공하는 화장품의 라벨 관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함

판매포장: 판매를 목적으로 내용물과 같이 소비자에게 건네지는 포장

내용물: 포장 용기 내에 들어있는 제품

전시면: 화장품 진열할 때, 밑바닥 외에 소비자에게 보여질 수 있는 모든 면

가시면: 화장품의 판매포장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볼 수 있는 모든 면

제33조 (해석 부문) 본 방법은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짐

제34조 (실시 일자) 본 방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함

이미 출시 판매된 제품, 포장이 본 방법 제 9조, 제 24조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재고 포장은 2016년 6월 30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음

본 방법 제 16조, 제 17조에서 제품 효능 표현과 관련된 실시 진도는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별도로 제정함

부록: 화장품 라벨 표시 금지용어 리스트

부록:

화장품 라벨 표시 금지용어 리스트

어휘가 화장품 명칭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반드시 그 언어 환경에 근거하여 확정하여야 함. 화장품 명칭에 표현 금지되는 말의 의미 또는 사용 금지되는 어휘:

1. 의료용어

- (1) **적응증 관련 용어,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않음:** 妊娠纹、妊娠斑、黄褐斑、病理性脱发、斑秃、全秃、普秃、疤、癍、疹、疮、疔、疥、疖、痈、癣、炎、伤、痛、肿、脓、疱、痉挛、抽搐、酒糟鼻、脚气、感染、止脱、生发、净斑
- (2) **의학전문관련용어,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않음:** 医*、医护人员专用称谓（예를 들어 医生、医师、大夫、中医、军医、药师、郎中、护士等）、专科、患、靶向、医疗、医治、治疗、治愈、愈合、内分泌、病毒、细菌（致病菌）、真菌（致病菌）、免疫、排毒、脱敏、抗敏、防敏、杀菌、灭菌、防菌、抑菌、抗菌、除菌、消毒
- (3) **약학전문관련용어,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않음:** 药*、药方相关称谓（예를 들어 药方、汉方、韩方、藏方、苗方、蒙方、维方、古方、秘方、验方、祖方、单方、复方、方剂、处方等）、药用、药物、中药、中草药、生长因子、激素、荷尔蒙、抗生素
- (4) **기타용어:** 基因、因子、干细胞、干扰素、毛细血管、淋巴、中枢神经、细胞修复、红血丝、黑眼圈、药妆

2. **의료작용과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용어,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않음:** 补肾、补血、活血、除湿、排毒、解毒、调节内分泌、吸附铅汞、生肌、祛寒、去除雀斑、祛风、祛红、通脉、行气、益气、理气

3. **허위과대용어,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않음:** 复活、再生、新生、更生、重生、整形、微整、整肤、换肤、抗疲劳、丰乳、丰胸、高渗透、透皮、激活、活细胞、减肥、瘦、净脂、清脂、吸脂、燃脂、溶脂、抗氧、零负担、敏感**、纳米**、强壮、热能、透活、微导、无添加*

*、纯天然**、纯植物**、生态**、有机**

4. **절대화용어,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않음:** 特效、全效、强效、奇效、高效、专效、神效、速效、极效、超效、超强、全面、全方位、最、第一、特级、顶级、冠级、至尊
5. **의학명인의 성명,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않음:** 神农、扁鹊、华佗、张仲景、李时珍、孙思邈、南丁格尔、白求恩
6. **제품의 특성과 관련이 없고 소비자에게 쉽게 오인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용어,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않음:** 解码、数码、智能、红外线、活能?、活氧、科技平衡、冷效应、养分修复、氧份修复
7. **불건미신 및 사회풍속에 위배되는 용어,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않음:** 예를 들어 鬼、妖精、卦、邪、魂、神灵
8. **이미 비준된 약이름, 포함되지만 한정되지는 않음:** 예를 들어 肤螨灵、皮炎平、皮康霜
9. **제품용도를 벗어나 표현한 용어.** 예를 들어 특수용도화장품 표현은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및 그 실시세칙에서 규정한 특수용도화장품 함의의 해석을 초과해서는 안 됨. 비특수용도화장품은 특수용도화장품 작용을 표현해서는 안 됨

주석:

1. *를 표시한 용어, 화장품라벨표시의 제품효능 등 표현에 사용해서는 안 됨. 경고용어 및 의법 등록된 기관명칭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2. **를 표시한 용어, 화장품라벨표시에 사용할 때 반드시 제품 등록 또는 등록할 때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여 그 진실성을 증명하여야 함

《화장품라벨관리방법》 초안 설명

(의견요청원고)

화장품 시장 감독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소비자 합법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사는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칭함)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초안 업무 관련 상황에 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음

1. 초안 원칙

- (1) 소비자가 선명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화장품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각도에서 화장품 라벨표시 행위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함
- (2) 현행의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근거로 하여, 예전에 정식으로 공포된 여러 종류 및 화장품라벨표시관리 관련 규장, 표준, 규범성 문건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범화함
- (3) 화장품 시장 감독관리 현황에 맞추어, 화장품라벨표시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라벨표시 위법행위를 더욱 강하게 단속하여 처벌함
- (4) 시스템 창조를 수단으로, 효능 표시관리 강화, 정보공개 추진 등 방법을 통하여, 사회공동처벌을 진일보 추진하고 기업주체책임을 다지며, 화장품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함

2. 주요내용 및 중점설명 문제

《화장품라벨표시관리방법》은 총 34조로, 화장품라벨정의, 표시요구, 법률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을 진행하였고,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방법》의 단계별 실시 기한을 제기하였으며, 내용은 주로 아래의 세 가지 방면을 포함함

(1) 현존하는 규정에 대한 통합 조정

《방법》 중 대부분의 조항은 주로 현존하는 100호령, 국가표준

5296.3 및 《화장품명명규정지침》 등 문건 관련규정에서 온 통합 조정이며, 상술한 규정과 일치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로 함

(2) 현존하는 충돌 규정에 대한 통일

《방법》이 정식 공포된 후 100호령 및 《화장품명명지침》을 대체할 것이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라벨감독관리업무의 주요한 집행 근거가 될 것이며, 국가표준 5296.3 중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조항은 역시 계속 적용될 것임

1. 강제표시 내용 통일(제 8조)

금번 정부 감독관리 직능이 조정된 후, 화장품위생허가증과 생산허가증은 이미 2개의 증서가 하나로 합쳐졌고, 생산허가증마크와 번호를 중복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짐; 질량검험불합격제품은 규정에 따라 출하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출하되고 출시되어 판매되는 포장에 강제로 “합격” 등 문구를 주석을 다는 것에 대한 실제 의의는 크지 않으며, 도리어 면적이 비교적 작은 화장품 포장의 표시에 어려움을 더 하는 것이므로, 본 규정에서는 현행 100호령에서 규정한 “제품질량검험 합격증명” 및 “화장품표시는 반드시 생산허가증 마크와 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두 가지 항목 내용의 표시를 삭제하였음

모든 화장품이 “화장품비준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감독관리부문 및 대중이 제품의 허가등록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고, 사회공동체별을 추진하는 각도에 유리하며, 시장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할 수 있음. “등록번호”라고 표시하는 것이 국산 비특등록이 실질상의 행정허가로 변하는 거라고 인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법 제 17조에서는 비준번호 및 등록번호의 표시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였으며, 국산비특등록번호에 대하여 자동사전 심사비준을 실행하여, 기업에게 포장을 설계 제작할 때 사용하도록 제공함

2. 생산자 명칭, 주소 표시요구 통일(14조, 15조)

《방법》 제 14조는 100령 및 원 국가국 《화장품행정허가신고접수 규정》 중 관련기업 주소 및 실제원산지가 불일치하는 상황에 대하여 통일 규범을 진행하였음. “내용물에 접촉하는 마지막 제조 공정”(충진)이 화장품 생산공정 통제에 중요한 일환(미생물 통제)인 것을 고려하고, 현행하는 화장품허가관리규정 중 제품이 수입제품신고의 근거에

따르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방법》에서 명확하게 함: 화장품실제생산 기업은 반드시 내용물 접촉의 마지막 공정제작이 완성하는 기업 및 그 주소이어야 함

소비자가 권익을 옹호하고 각 급 감독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위법제품의 법률책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 15조에서 수입화장품은 반드시 해당 제품안전책임을 지는 재중기업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생산가공의 제품은 반드시 위탁 쌍방의 명칭 및 주소를 완전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함

(3) 현존하는 규정에 대한 혁신적인 조정

1. 허가등록제품의 라벨정보를 주동적으로 공개, 사회공동체별 추진

라벨정보는 화장품행정허가 및 등록심사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오랫동안 제품허가 및 등록할 때의 라벨정보는 주동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시장 감독관리부문 및 소비자는 시판제품의 라벨이 허가등록부문의 심사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별할 방법이 없었음. 《방법》은 제 5조, 제 6조에 규정함: 화장품라벨표시는 반드시 비준 또는 등록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화장품 허가 또는 등록의 라벨표시정보를 주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대중이 검색하여 감독하도록 제공하여야 함

화장품이 유행제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은 제품 포장을 자주 변경할 것이고 일부 변경이 제품안전 및 효능표시와 같은 실제상황과 관련이 없으면, 방법 제 25조 “변경은 반드시 사안을 보고하고 조작성은 가능한 간소화 하여야 함”의 원칙에 따라 라벨표시의 변경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함

2. 문제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위법표시 감독관리 강화

위법표시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법》제 9조는 현존하는 규정 표시금지의 내용에 대하여 거듭 밝히고 세분화를 진행함; 일부 제품이 글자체 도안 변경, 의료표시가 담긴 상표 사용 및 정부부문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인증표시로 위법표시를 진행한 현상에 대하여, 《방법》제 10조, 제 11조, 제 13조, 제 24조 등 조항에 일부 표시 글자체 및 표시 위치에 대하여 규범화를 진행하였고, 위법 표시를 변형한 상황에 대하여 금지성 규정을 설정함

3. 제품특징에 근거하여 제품의 라벨관리를 규범화

산업 특징에서 보면, 화장품은 과학 연구개발의 성과인 동시에 유행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과대 허위 표시로 소비를 잘못 이끄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반드시 화장품이 제품유행, 낭만적인 특징과 상응하는 표시를 진행하도록 허가하여야 함. 《방법》 제 10조에서는 화장품 라벨 중 업계에서 아직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는 창의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 심하게 관리처벌하여 산업 창의를 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소비자로 하여금 더 명확하게 “창의용어”의 실제 함의를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방법》에서는 동일한 전시면에 동일한 글자크기로 해당 창의용어의 구체적인 함의에 대하여 해석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방법》 부록의 《금지용어리스트》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산업의 특징을 주시하였으며, 원 《화장품명명규정지침》에 나열된 금지용어와 비교하여 몇 가지 방면의 조정을 진행함

4. 효능표시 관리방식의 창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

효능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화장품 효능 표시관리 강화 역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임. 《방법》 제 19조는 효능표시의 관리에 대하여 원칙성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기업이 평가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효능은 검증을 거치지 않음”을 강제적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함. 이 조항의 설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입법 각도에서 기업이 과학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제품의 기술 함량을 높임

구체적인 관리의 방식에서, 《방법》은 전통적인 행정허가 관리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제품효능평가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통하여 시장 소비를 지도하며, 시장에서 기업이 끊임없이 제품의 기술 함량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 화장품 효능평가기 관관리에서 역시 동일하게 비슷한 제도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정부 감독관리부문은 효능평가기관에 대하여 인정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효능평가관리에 대하여 조건 요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주동적으로 평가 보고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대중 감독을 받도록 하며, 사실대로 보고서를 발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방법》은 관련 벌칙을 설정함. 사

후감독과 대중 참여를 이끄는 방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벌을 추진하고 소비권익을 더 보장하도록 함

5. 요구를 통일, 수입화장품라벨관리의 규범화

각국의 법규 차이로 인하여 화장품 라벨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감독관리 현황에서 보면, 현행의 중문라벨을 붙이는 형식은 비교적 많은 결점이 존재함; 첫째, 일부 수입제품 원포장 라벨표시내용과 중국에서 현행하는 법규가 불일치하여 사실상 국산제품에 대한 불공평을 조성함; 둘째, 붙인 중문라벨이 쉽게 떨어지고 위법기업이 중복으로 붙이는 형식을 통하여 마음대로 라벨내용을 고치기 쉬움. 국내외 제품이 라벨표시 방면에서 공평하고 일치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한 라벨감독관리를 진일보 쉽게 강화하기 위하여, 《방법》은 약품라벨관리의 방식을 참조하여, 수입 및 국산화장품에 대하여 통일적인 요구를 채택하였으며, 예외없이 붙이고, 절취하고, 비우고 고치는 등 방식을 통하여 제품라벨표시에 대하여 고치거나 보충하는 것을 금지함

(4) 《화장품라벨표시금지용어리스트》 관련

예전 행정허가 및 시장 감독관리 중 발견한 자주 보이는 위법 표시 용어에 대하여 정리를 한 것을 토대로, 원 국가국 《화장품명명규정지침》의 규정과 결합하여, 일상 감독관리 업무 중 조작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사는 동시에 《화장품라벨표시금지용어리스트》를 제정하였음. 시장 표시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국은 이 리스트에 대하여 변화에 대한 보충을 진행할 것임



